산재사망사고 **절반**으로 줄입시다!

안전보건가이드라인

편의점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알려주어야 할
주요 안전보건 정보

고용노동부
산업재해예방
안전보건공단

Contents

01 가이드라인 개요 05

02 편의점 산업 현황 07

1. 편의점 산업 개요 및 특성 08
2. 편의점 산업재해 현황 및 재해발생 유형 10
   - 참고 : 국내 프랜차이즈 산업 현황

03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알려주어야 할 안전보건 정보 13

1. 사업주와 근로자의 의무 14
2. 산재보험 가입절차 및 산재 발생 시 처리 절차 16
3. 출퇴근 재해예방 25
4. 안전·보건교육 27
5. 안전보건표지 31
6. 보호구 33
7. 위험성평가 35
8. 근로자 건강진단 37
9. 근골격계질환 예방 38
10. 감정노동 관리 41

04 주요 공정에 따른 유해·위험요인 및 예방대책 43

1. 주요공정 44
2. 주요공정별 위험요인 및 예방대책 45
3. 비상상황 대처요령 52
   - 화재 발생 시 대처요령
   - 강도사건 등 발생 시 대처요령
   - 지진 발생 시 대처요령

05 주요 유관기관 연락처 59

chapter 01

가이드라인 개요

01. 발간 배경 및 목적

- 최근 국내 프랜차이즈 산업은 가맹본부 수, 영업표지 수, 가맹점 수 면에서 모두 지속적으로 양적 성장하는 추세
- **업종별 가맹점 수***는 외식업, 서비스업, 도소매업 순이나 세부업종별로는 **편의점이 14.1%(30,846개)로 가장 많이 차지**하며 치킨, 한식 순으로 점유
- 최근 5년('13 ~'17년)동안 편의점*에서는 341명의 재해자가 발생하였고, 이 중 질병사망자 2명 및 폭력에 의한 사망자 1명이 발생 (산업재해통계 상 표준산업분류 '체인화 편의점'에 한함.)

이처럼 강도, 폭력에 의한 재해 및 감정노동은 최근 사회적으로 매우 이슈화 되고 있으며, 편의점도 이러한 위험요인에 노출됨.

- 편의점은 가맹사업장의 대부분이 영세소규모이며 이로 인해 재해예방조치에 대한 정보수집, 대책마련 등에 한계가 있으므로, 가맹점 안전관리를 위한 가맹본부의 역할이 더욱 중요
- '**편의점 프랜차이즈 안전·보건가이드라인**'에는 편의점 가맹본부에서 가맹점주에게 알려주어야 할 안전·보건정보, 사업주 및 근로자 의무, 편의점 사고사례 및 안전대책 등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가맹본부**는 이를 **가맹점주에게 제공하고 가맹점주는 사업주**로서 근로자를 위한 안전보건관리에 노력을 기울여야함.

가맹점주는 사업주로서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위하여 산재보험가입, 안전·보건교육 실시, 보호구지급, 위험성평가 및 근로자 건강진단실시 등의 의무를 이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영세사업장의 경우 해당 내용을 모르거나, 관련 정보를 얻기 어려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가맹본부**는 가맹점주(사업주)에게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사용설비에 관한 안전·보건정보, 안전한 작업방법 등을 안내하고,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및 작업별 안전 가이드를 제공하여야 하며 최근 안전보건이슈사항 및 동종업종 사고사례 등을 공유함으로써 가맹점의 자율적인 안전보건활동을 지원하여야 합니다.

chapter 02

편의점 산업 현황

- 편의점 산업 개요 및 특성
- 편의점 산업재해 현황 및 재해발생 유형

02. 편의점 산업 현황

1.편의점 산업 개요 및 특성

편의점 개요

편의점이란 편리함을 개념으로 도입 된 소형소매점포로 고객의 편의를 위하여 장시간(일부 24시간) 문을 여는 잡화점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평균 20~45평의 공간에서 1~3명의 직원이 상주하여 근무함.

- 상품의 입고 및 운반, 진열 등 근골격계질환과 각종 가공·즉석식품의 발달에 따른 전기온수기, 전기튀김기 등의 사용에 따른 화상 등의 위험에 노출됨.
- 특히 야간근무에 따른 취객이나 강도에 의한 상해, 감정노동에 따른 스트레스 등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

편의점 산업 특성

산업구조

- 편의점 산업은 상대적으로 소자본 창업이 1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이 대부분이며, 사업장의 휴·폐업율이 높은 산업군에 속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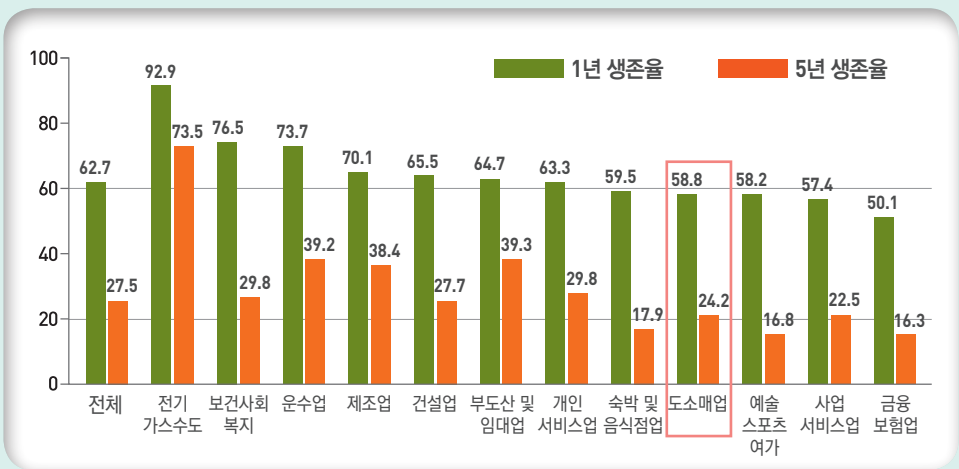

주요 산업별 1년, 5년 생존율[기업생멸 행정통계결과(통계청, '17. 12. 14)]

근로환경

- 아르바이트생와 같은 비정규직 고용에 따른 안전보건에 관한 사업주·근로자의 낮은 인식 및 높은 이직률로 인하여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재해예방활동 추진에 어려움이 있음.
- 일반적인 작업 중 발생하는 산업재해뿐 아니라 야간 또는 새벽 시간 근로에 따른 건강장해, 강도·취객 등에 의한 예기치 못한 사고 위험에 노출 됨.

인력구조

- 시간제 비정규직 고용이 주를 이루며 청소년 및 청년 근로자의 근로비중이 높게 나타났으나 최근 5년간 50대 이상의 '황혼 알바생' 구직이 7배 이상 증가하여 장년층 근로자 비율이 급증하고 있음.
- 상대적으로 높은 이직률과 별도의 전문기술이 필요치 않은 업무 특성 상 숙련되지 않은 근로자가 별도의 교육 없이 현장업무에 바로 투입되는 경우가 많고, 주로 단기 아르바이트를 고용하여 사용함.
- 특히 최저임금 인상 및 과다출점 등에 따른 경기 악화로 인해 사업주 또는 사업주의 가족이 직접 업무를 수행하기도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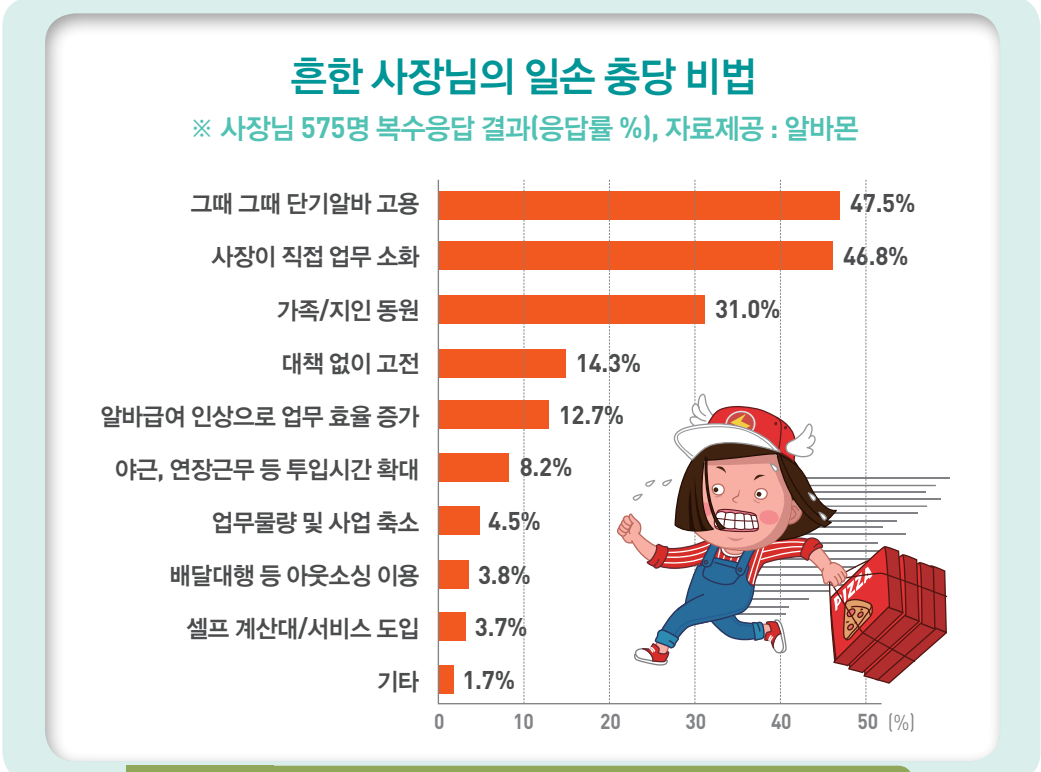

흔한 사장님의 일손 충당 비법(출처 : 알바몬)

2. 편의점 산업재해 현황 및 재해발생 유형

편의점 산업재해현황(총괄)

최근 5년('13 ~'17년)동안 편의점*의 사업장수와 근로자수는 꾸준히 증가추세를 보이는 반면, 재해자수는 '15년 이후 증가추세를 보임. 특히'17년은 전년동기대비 22.5%가 증가하여 82명의 재해자가 발생 *

* 산업재해통계 상 표준산업분류 '체인화 편의점'에 한함.

- 최근 5년('13 ~'17년)동안 사망자는 총 3명 발생
  - 질병사망자 2명, 폭력에 의한 사망 1명

[단위 : 명]

재해자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합계
합계(재해자 수)	73	65	52	68	83	341
사고부상자 수	59	61	47	56	74	297
그 외 사고사망자 수	-	-	-	-	1	1
질병이환자 수	14	3	5	11	8	41
질병사망자 수	-	1	-	1	-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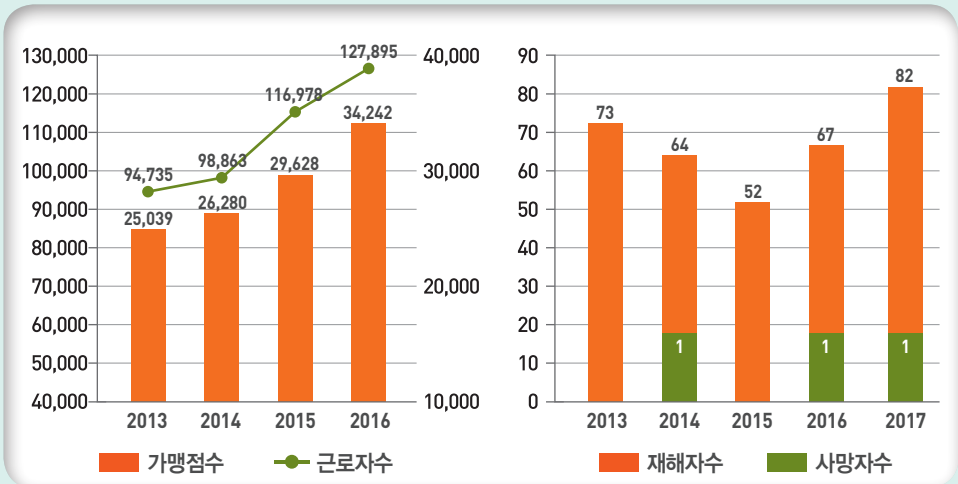

편의점 가맹점수 및 근로자수_통계청

편의점 재해현황_안전보건공단

편의점 주요 산업재해 발생유형

미끄러짐 또는 넘어짐

- 편의점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재해로 상품 입고 및 운반 또는 이동 중 빈번하게 나타나며 계단에서 미끄러지거나 상품 박스에 걸려 넘어짐, 바닥 물기(빗물, 눈 등) 등에 의해 미끄러짐

작업관련질병(요통 등 근골격계질환)

- 상품박스, 음료 등을 검수·운반하거나 진열하던 중 허리, 어깨 등에 요통 등 근골격계질환이 발생

떨어짐

- 편의점 특성 상 창고, 매장 등 장소가 협소하여 작업발판 또는 이동식사다리 사용에 어려움이 있어 유제박스, 의자 등을 밟고 상품 진열·적재작업을 하던 중 발생

절단·베임·찔림

- 분리수거 작업 중 깨진 유리조각 등의 뾰족한 물건이나 창고 진열대 등 날카로운 금속부분, 포장박스 개봉 또는 검수 작업 중 가위, 칼 등에 의한 손 베임 사고가 발생

끼임

- 음료 박스 등을 정리하던 중 선반과 박스 사이에 손이 끼이거나 이동대차로 중량물 운반 중 대차에 발 끼임, 금고 또는 계산대 접이식 문 등에 손이 끼임

이상온도 접촉

- 전기온수기(온수통), 튀김기, 오븐기 등에 의한 화상

폭력행위

- 취객 등 고객과의 시비로부터 발생하는 폭행, 강도사건 등에 의한 상해를 입는 사고가 타 업종에 비해 다수 발생

chapter 03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알려주어야 할 안전보건 정보

- 사업주와 근로자의 의무
- 산재보험 가입절차 및 산재 발생 시 처리 절차
- 출퇴근 재해예방
- 안전·보건교육
- 안전보건표지
- 보호구
- 위험성평가
- 근로자 건강진단
- 근골격계질환 예방
- 감정노동 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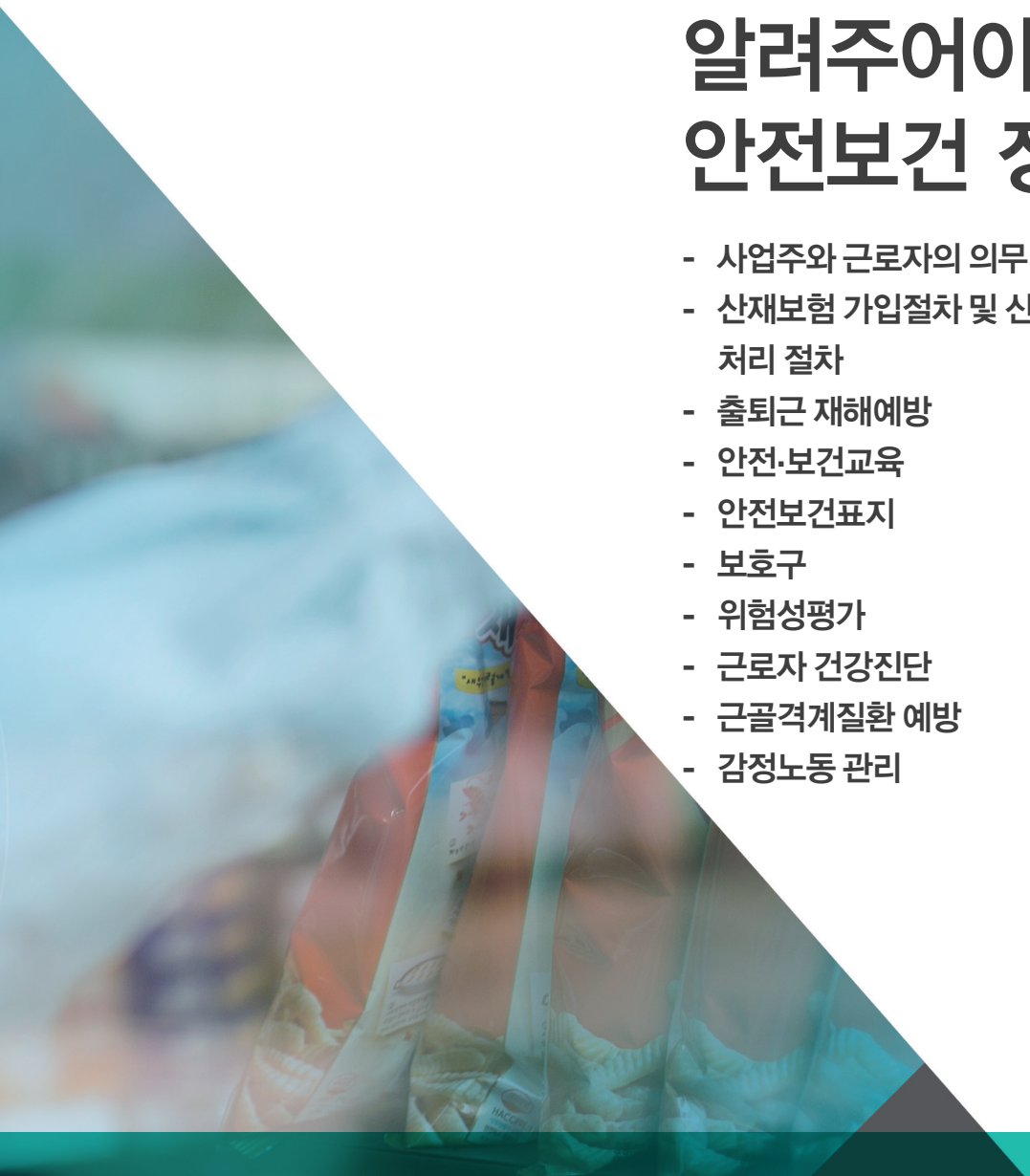

03.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알려주어야 할 안전보건 정보

1. 사업주와 근로자의 의무

●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으로 고용노동부 소관법령이며 1개의 법률, 1개의 시행령, 3개의 시행규칙으로 구성됨.

산업안전보건법 체계

●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 및 근로자에게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부여함.

산업안전·보건관리는 사업주 책임 하에서 행해져야 하며, 사업주는 기업경영을 총괄 지휘하고 조직 내 모든 안전보건관리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된다. 또한 사업주는 근로자의 안전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고 근로자는 사업주의 안전·보건 조치가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참고 :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제6조]

사업주의 법률상 책임

- 사업주는 근로자 임금지불 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신체와 생명에 생길 수 있는 위험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할 의무를 가지며,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하고 있지 않음을 사업주가 입증하여야 함.

[사업주 의무사항]

▶ 국가에서 시행하는 산업재해예방 시책 등을 준수
▶ 산업재해 발생 보고 및 기록·보존 / 산업안전보건법령 요지 게시
▶ 유해·위험한 장소에 안전·보건 표지 부착 / 안전·보건상 필요한 조치 이행
▶ 근로자의 생명을 지키고 안전·보건을 유지·증진
▶ 안전보건규정을 작성하여 사업장에 게시하거나 근로자에게 알림

근로자의 의무

- 근로자는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주가 실시하는 산업재해방지에 관한 조치를 따라야 함.

[근로자 의무사항]

▶ 사업주가 행한 안전·보건 상의 조치사항 준수
▶ 사업주가 실시하는 근로자 건강진단 이행
▶ 사업주가 제공한 안전모, 안전화 등 보호구 착용

※「산업안전보건법」 검색방법

-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접속 ⇨ 검색창에 「산업안전보건법」 입력
- 고용노동부(www.moel.go.kr) 접속 ⇨ 정보공개 ⇨ 법령정보·현행법령 ⇨ 산업안전보건관련
- 안전보건공단(www.kosha.or.kr) 접속 ⇨ 정보마당 ⇨ 법령/지침정보 ⇨ 산업안전보건법령 검색

2. 산재보험 가입절차 및 산재발생 시 처리절차

산재보험 가입절차

산재보험 가입 대상

- 근로자 1인 이상 고용(사용)하는 모든 사업장

산재보험 가입 절차

① **성립신고서 / 가입신청서 접수**

- 보험관계성립신고서(임의가입은 가입신청서) 접수
  - 근로복지공단 토탈서비스**(http://total.kcomwel.or.kr)**,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www.4insure.or.kr)**에서 인터넷 신고 가능
- 신고기한 : 근로자를 고용한날로부터 14일 이내
- 첨부서류 : 사업자등록증, 임금대장, 생산제품설명서, 근로자고용정보신고서 등

② **재해사실여부/업종/성립일자 등 확인**

- 재해사실 여부 확인
  - 당연적용 사업장이 보험관계성립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재해가 발생한 경우 지급결정된 보험급여액의 50%를 사업주에게 별도 징수
- 업종 및 성립일자 확인
  - 산재보험료율 및 사업종류예시표(매년 고용노동부 고시 참고) 기준
  - 근로자 최초 채용일(임의적용사업장은 보험가입신청서를 접수한 다음날)

③ **보험관계성립에 대한 승인/불승인 통지**

중소기업사업주에 대한 적용특례

- 사실상 실제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은 중소기업사업주가 산재위험에 노출됨에 따라, 산재보험에 임의로 가입할 수 있는 제도
  - 5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소속사업장의 산재보험가입을 전제로 가입이 승인되며, 가입신청서의 '업무 내용'란에 실제 업무내용 및 근로시간 등을 구체적으로 기입하여 사업장 소재지 근로복지공단 관할지사에 제출

산재발생 시 조치사항 및 처리절차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재발방지를 위하여 재해발생 원인과 재발방지 계획 등을 사업주가 기록하고 보존하고,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여야 하며, 중대재해는 지체 없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산업재해는 반복해서 발생하는 속성이 있기 때문에 발생한 산업재해를 분석·검토하여 동종재해 또는 유사재해의 재발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따라서, 재해 재발방지계획을 수립·기록하여 3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참고 :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재해자 발견 시 조치사항

- 재해발생 기계의 정지 및 재해자 구출
  - 병원 긴급 후송 : 환자에 대한 응급처치와 동시에 119구급대, 병원 등에 연락하여 긴급 후송
  - 보고 및 현장보존 : 관리감독자 등 책임자에게 알리고, 사고원인 등의 조사가 끝날 때 까지 현장을 보존

산업재해 발생보고

- 산업재해로 사망자 또는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의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

▶ **산업재해** : 근로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 설비, 가스, 원재료, 증기, 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기타 업무에 기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

▶ **중대재해** : 산업재해 중 사망 등 재해정도가 심한 것으로 다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재해

① 사망자 1인 이상 발생

②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 동시에 2명 이상 발생

③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

•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게 전화, 팩스,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함. 단,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그 사유가 소멸된 때부터 지체없이 보고

- 보고사항 : ① 발생개요 및 피해상황 ② 조치 및 전망 ③ 그 밖의 중요사항

산업재해 기록·보존

• 산업재해가 발생 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고, 이를 3년간 보존

(단, 산업재해조사표 사본을 보존하거나 요양신청서의 사본에 재해 재발방지계획을 첨부하여 보존한 경우 예외)

① 사업장의 개요 및 근로자의 인적 사항 ② 재해발생의 일시 및 장소
③ 재해발생 원인 및 과정 ④ 재해 재발방지 계획

재해 재발방지계획의 수립

• 산업재해 발생 원인의 분석 및 검토는 일반적으로 다음의 순서에 따라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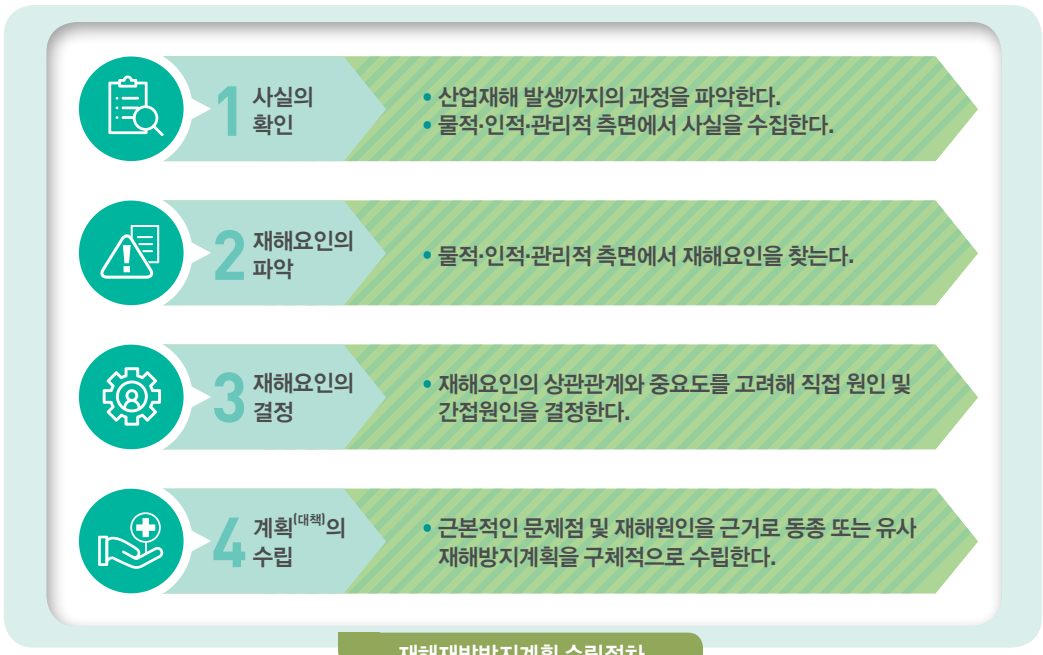

재해재발방지계획 수립절차

• 재해요인을 파악할 때에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위주로 도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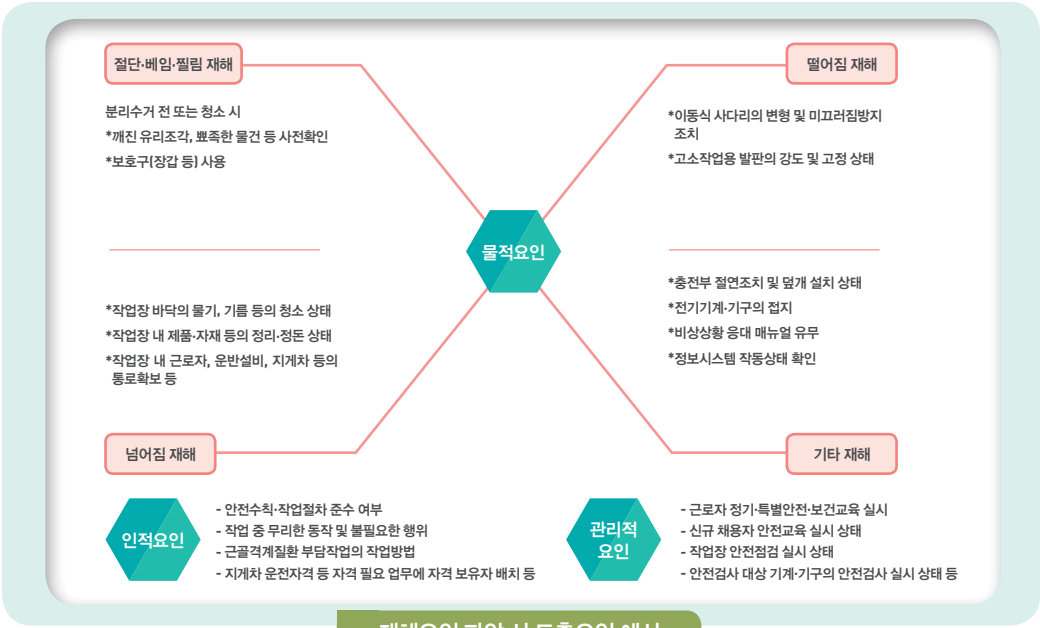

재해요인 파악 시 도출요인 예시

• 재해요인으로 파악된 문제점 및 재해원인을 근거하여 구체적이고 실시 가능한 내용으로 물적·인적·관리적 측면에서 재해재발방지계획을 수립하고, 수립된 내용에 대해서는 사업장 근로자에게 전달하여 전체적으로 공유

※ 재해재발방지계획 수립 시 참고자료 검색방법

- 공단홈페이지(**www.kosha.or.kr**) 접속 ⇨ 정보마당 ⇨ 산업재해통계 ⇨ 국내 재해사례 검색

요양신청 절차

• 사업장 내에서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이 발생하면 산재지정병원에서 치료중인 상태에서 요양급여 신청서를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신청 후 공단에서 승인여부를 결정 받아 요양급여를 받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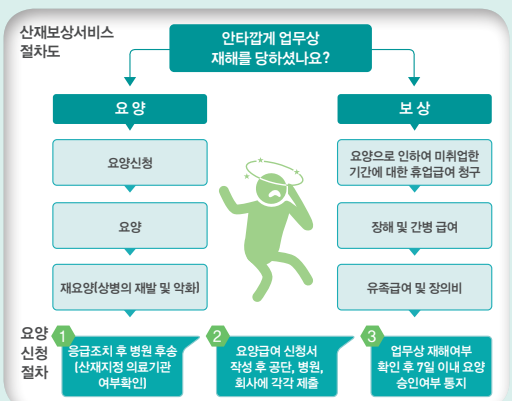

산재보상서비스 및 요양신청 절차

• **요양급여 신청서 작성**

- 재해자의 인적사항, 재해 목격자, 사고 경위 등을 기재하고 사업주와 신청인(재해자) 날인
  : 신청서 제출 위임란에 날인하면 의료기관이 접수가능
  : 사업주 날인 거부 시, 거부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면 사업주 날인 없이 제출 가능
- 병원에 제출하여 요양급여 신청서 뒷면에 의사소견서 작성
-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 병원, 회사에 각 1부씩 제출
- 업무상질병(일부상병 제외)는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에서 심의
  : 신청서를 제출받은 소속 기관장은 업무상 질병에 대하여 7일 이내에 판정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하고, 판정위원회는 20일 이내(1차 10일 이내 연장 가능)에 심의하여 그 결과를 해당 소속기관장에게 통지

• **업무상 재해여부 확인 및 결과통지**

- 업무상 사유에 의한 재해여부가 명확한 경우 7일 이내 요양승인 여부 결정 통지
- 업무내용이나 사고경위 등에 대한 구체적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경우 처리기간이 지연될 수 있으며, 업무상질병의 경우 업무와의 인과관계 확인에 오랜 기간이 소요될 수 있음

• **불승인 통지에 관한 이의신청**

- 요양 불승인 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 처분이 있음을 인지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지사를 경유하여 공단 산재심사실에 심사 청구하거나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 제기 가능
- 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불승인 결정된 경우에는 심사청구 절차 없이 처분지사를 경유하여 고용노동부 산업재해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하거나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 제기 가능

요양 급여의 종류

① 장해급여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되었으나 신체에 정신적 또는 육체적 장해가 남아 장해급여 지급대상에 해당 될 경우 장해등급에 해당되는 지급일수에 평균임금을 곱하여 지급되는 보험급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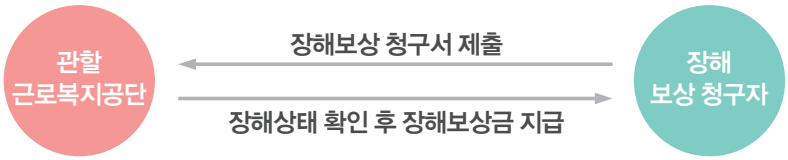

② 유족급여

근로자가 업무상사유로 사망한 경우 부양하고 있던 유족에게 지급되는 급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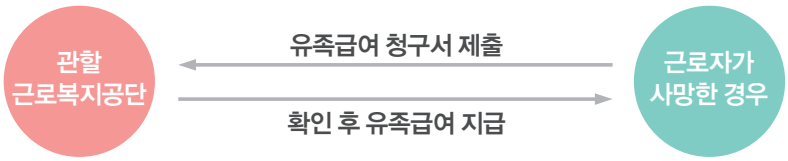

- 구비서류 :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1부, 근로자 사체부검 소견서(사인미상인 경우) 1부, 주민등록등본 또는 호적등본 1부, 기타 평균임금 및 업무상사망 입증서류 각 1부

③ 휴업급여

업무상 사유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으로 취업하지 못한(입원/통원)에 대하여 1일당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지급되는 급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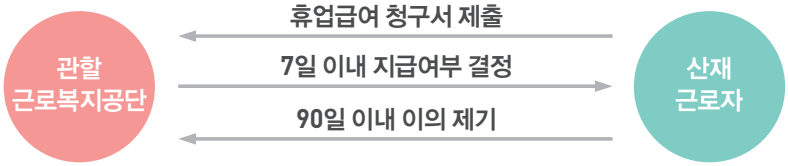

[별지 제 1호] 산업재해조사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6. 2. 17.>

산업재해 조사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해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쪽)

Ⅰ. 사업장 정보	①산재관리번호 (사업개시번호)			사업자등록번호		
	②사업장명			③근로자 수		
	④업종			소재지	(-)	
	⑤재해자가 사내 수급인 소속인 경우(건설업 제외)	원도급인 사업장명		⑥재해자가 파견 근로자인 경우	파견사업주 사업장명	
		사업장 산재관리번호 (사업개시번호)			사업장 산재관리번호 (사업개시번호)	
	건설업만 기재	⑦원수급 사업장명		공사현장 명		
		⑧원수급 사업장 산재관리번호 (사업개시번호)				
		⑨공사종류		공정률	%	공사금액 백만원

※ 아래 항목은 재해자별로 각각 작성하되, 같은 재해로 재해자가 여러 명이 발생된 경우 별도 서식에 추가로 적습니다.

Ⅱ. 재해 정보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성별	[ ]남 [ ]여
	국 적	[ ]내국인 [ ]외국인 [국적: ⑩체류자격:]			⑪직업	
	입사일	년 월 일	⑫같은 종류업무 근속기간		년 월	
	⑬고용형태	[ ]상용 [ ]임시 [ ]일용 [ ]무급가족종사자 [ ]자영업자 [ ] 그 밖의 사항 [ ]				
	⑭근무형태	[ ]정상 [ ]2교대 [ ]3교대 [ ]4교대 [ ]시간제 [ ] 그 밖의 사항 [ ]				
	⑮상해종류 (질병명)		⑯상해부위 (질병부위)		⑰휴업 예상일수	휴업 [ ]일
					사망 여부	[ ] 사망

Ⅲ. 재해발생 개요 및 원인	⑱ 재해 발생 개요	발생일시	[ ]년 [ ]월 [ ]일 [ ]요일 [ ]시 [ ]분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⑲재해발생 원인		
Ⅳ. ⑳재발방지 계획			

※ 아래 항목은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재해자별로 산재요양 이후 직장복귀계획에 관한 사항을 작성합니다.

Ⅴ. 직장복귀 계획	복귀 가능 여부	[ ]복귀 가능 [ ]복귀 불가능 [ ]미정
	복귀 불가능 또는 미정 사유	[ ]대체인력 고용 [ ]업무수행 곤란 [ ]재해자의 복귀 비희망 [ ]그 밖의 사항[ ]

작성일 년 월 일 작성자 성명 작성자 전화번호

사업주 (서명 또는 인)

근로자대표(재해자) (서명 또는 인)

( )지방고용노동청장(지청장) 귀하

재해 분류자 기입란 (사업장에서는 적지 않습니다)	발생형태 □□□	기인물 □□□□□
	작업지역 · 공정 □□□	작업내용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작성방법

Ⅰ. 사업장 정보

①산재관리번호(사업개시번호):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이 되어 있으면 그 가입번호를 적고 사업장등록번호 기입란에는 국세청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다만, 근로복지공단의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사업자등록번호만 적습니다.
※ 산재보험 일괄 적용 사업장은 산재관리번호와 사업개시번호를 모두 적습니다.

②사업장명 : 재해자가 사업주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실제로 급여를 받는 사업장명을 적습니다. 파견근로자가 재해를 입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지휘 · 명령을 받는 사용사업주의 사업장명을 적습니다. [예: 아파트를 건설하는 종합건설업의 하수급 사업장 소속 근로자가 작업 중 재해를 입은 경우 재해자가 실제로 하수급 사업장의 사업주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하수급 사업장명을 적습니다.]

③근로자 수: 사업장의 최근 근로자수를 적습니다(정규직, 일용직 · 임시직 근로자, 훈련생 등 포함).

④업종: 통계청(www.kostat.go.kr)의 통계분류 항목에서 한국표준산업분류를 참조하여 세세분류(5자리)를 적습니다.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 세세분류를 알 수 없는 경우 아래와 같이 한국표준산업명과 주요 생산품을 추가로 적습니다.
[예: 제철업, 시멘트제조업, 아파트건설업, 공작기계도매업,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업, 중식음식점업, 건축물 일반청소업 등]

⑤재해자가 사내 수급인 소속인 경우(건설업 제외): 원도급인 사업장명과 산재관리번호(사업개시번호)를 적습니다.
※ 원도급인 사업장이 산재보험 일괄 적용 사업장인 경우에는 원도급인 사업장 산재관리번호와 사업개시번호를 모두 적습니다.

⑥재해자가 파견근로자인 경우: 파견사업주의 사업장명과 산재관리번호(사업개시번호)를 적습니다.
※ 파견사업주의 사업장이 산재보험 일괄 적용 사업장인 경우에는 파견사업주의 사업장 산재관리번호와 사업개시번호를 모두 적습니다.

⑦원수급 사업장명: 재해자가 소속되거나 관리되고 있는 사업장이 하수급 사업장인 경우에만 적습니다.

⑧원수급 사업장 산재관리번호(사업개시번호): 원수급 사업장이 산재보험 일괄 적용 사업장인 경우에는 원수급 사업장 산재관리번호와 사업개시번호를 모두 적습니다.

⑨공사 종류, 공정률, 공사금액 : 수급 받은 단위공사에 대한 현황이 아닌 원수급 사업장의 공사 현황을 적습니다.
가. 공사 종류: 재해 당시 진행 중인 공사 종류를 말합니다. [예: 아파트, 연립주택, 상가, 도로, 공장, 댐, 플랜트시설, 전기공사 등]
나. 공정률: 재해 당시 건설 현장의 공사 진척도로 전체 공정률을 적습니다.(단위공정률이 아님)

Ⅱ. 재해자 정보

⑩체류자격: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체류자격(기호)을 적습니다.(예: E-1, E-7, E-9 등)

⑪직업: 통계청(www.kostat.go.kr)의 통계분류 항목에서 한국표준직업분류를 참조하여 세세분류(5자리)를 적습니다. 다만, 한국표준직업분류 세세분류를 알 수 없는 경우 알고 있는 직업명을 적고, 재해자가 평소 수행하는 주요 업무내용 및 직위를 추가로 적습니다.
[예: 토목감리기술자, 전문간호사, 인사 및 노무사무원, 한식조리사, 철근공, 미장공, 프레스조작원, 선반기조작원, 시내버스 운전원, 건물내부청소원 등]

⑫같은 종류 업무 근속기간: 과거 다른 회사의 경력부터 현직 경력(동일 · 유사 업무 근무경력)까지 합하여 적습니다.(질병의 경우 관련 작업근무기간)

⑬고용형태: 근로자가 사업장 또는 타인과 명시적 또는 내재적으로 체결한 고용계약 형태를 적습니다.
가. 상용: 고용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았거나 고용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사람
나. 임시: 고용계약기간을 정하여 고용된 사람으로서 고용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 1년 미만인 사람
다. 일용: 고용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사람 또는 매일 고용되어 근로의 대가로 일급 또는 일당제 급여를 받고 일하는 사람
라. 자영업자: 혼자 또는 그 동업자로서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은 사람
마. 무급가족종사자: 사업주의 가족으로 임금을 받지 않는 사람
바. 그 밖의 사항: 교육 · 훈련생 등

⑭근무형태 : 평소 근로자의 작업 수행시간 등 업무를 수행하는 형태를 적습니다.
가. 정상: 사업장의 정규 업무 개시(시각과 종료시각)통상 오전 9시 전후에 출근하여 오후 6시 전후에 퇴근하는 것) 사이에 업무수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나. 2교대, 3교대, 4교대: 격일제근무, 같은 작업에 2개조, 3개조, 4개조로 순환하면서 업무수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 시간제 : 가목의 '정상' 근무형태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당 근무시간보다 짧은 근로시간 동안 업무수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 그 밖의 사항: 고정적인 심야(야간)근무 등을 말합니다.

⑮상해종류(질병명): 재해로 발생된 신체적 특성 또는 상해 형태를 적습니다.
[예: 골절, 절단, 타박상, 찰과상, 중독 · 질식, 화상, 감전, 뇌진탕, 고혈압, 뇌졸중, 피부염, 진폐, 수근관증후군 등]

⑯상해부위(질병부위): 재해로 피해가 발생된 신체 부위를 적습니다.
[예: 머리, 눈, 목, 어깨, 팔, 손, 손가락, 등, 척추, 몸통, 다리, 발, 발가락, 전신, 신체내부기관(소화 · 신경 · 순환 · 호흡배설) 등]
※ 상해종류 및 상해부위가 둘 이상이면 상해 정도가 심한 것부터 적습니다.

⑰휴업예상일수: 재해발생일을 제외한 3일 이상의 결근 등으로 회사에 출근하지 못한 일수를 적습니다.(추정 시 의사의 진단 소견을 참조

Ⅲ. 재해발생정보

⑱재해발생개요: 재해원인의 상세한 분석이 가능하도록 언제[년, 월, 일, 요일, 시(24시기준), 분], 어느 장소 및 공정에서, 어떠한 기계 · 설비를 다루면서, 무슨 작업을 하고 있었을 때, 어떠한 재해가[떨어짐, 넘어짐, 끼임, 무너짐 등] 발생했는지를 상세히 적습니다. 특히 재해가 왜 발생하였는지의 내용을 적을 때에는 재해당시 기계 · 설비 · 구조물이나 작업환경 등의 불안전한 상태 요인과 재해자나 동료근로자가 어떠한 불안전한 행동을 했는지 인적요인의 내용을 상세히 적습니다.

[작성예시]

발생일시	2013년 5월 30일 금요일 14시 30분
어디서	사출성형부 플라스틱 용기 생산 1팀 사출공정에서
누가	재해자 000와 동료작업자 1명이 같이 작업 중이었으며
무엇을	재해자 000가 사출성형기 2호기에서 플라스틱 용기를 꺼낸 후 금형을 점검하던 중
어떻게	재해자가 점검중임을 모르던 동료근로자 000가 사출성형기 조작스위치를 가동하여 금형사이에 재해자가 끼어 사망하였음
왜	재해당시 사출성형기 도어인터록 장치는 설치가 되어있었으나 고장중이어서 기능을 상실한 상태였고, 점검과 관련하여 "수리중 · 조작금지"의 안전 표지판이나, 전원스위치 작동금지용 잠금장치는 설치하지 않은 상태에서 동료 근로자가 조작스위치를 잘못 조작하여 재해가 발생하였음

⑲재해발생 원인: 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서 재해발생 원인을 인적 요인(무의식 행동, 착오, 피로, 연령, 커뮤니케이션 등), 설비적 요인(기계 · 설비의 설계상 결함, 방호장치의 불량, 작업표준화의 부족, 점검 · 정비의 부족 등), 작업 · 환경적 요인(작업정보의 부적절, 작업자세 · 동작의 결함, 작업방법의 부적절, 작업환경 조건의 불량 등), 관리적 요인(관리조직의 결함, 규정 · 매뉴얼의 불비 · 불철저, 안전교육의 부족, 지도감독의 부족 등)을 적습니다.

Ⅲ. 재해

⑳"19. 재해발생 원인"을 토대로 재발방지 계획을 적습니다.

재해 재발 방지 계획(예시)

■ 사업장 개요

사업장명		재해일시		재해자	
재해발생개요					

■ 재해발생 원인 분석 및 재발방지 대책

재해발생원인	
재발방지대책	
가. 단기적 대책 나. 장기적 대책	

※주) 1. 재해발생개요는 재해발생상황을 충분히 파악하여 육하원칙에 의거 작성
2. 재해발생원인과 재발방지대책은 상호대응이 되도록 조성
3. 재발방지대책은 사업장에서 즉시 개선이 가능한 것은 단기적 대책, 많은 비용과 개선기간이 소요되는 사항은 장기적 대책으로 제시

3. 출퇴근 재해예방

2018년 1월 1일부터 산재보험법 개정에 따른 '통상의 출·퇴근 재해 인정지침'이 시행됨에 따라, 업무에 종사하기 위해 또는 업무를 마침에 따라 이루어지는 출퇴근 행위 중 이동경로 상에서 발생한 재해는 산업재해로 인정된다.

[참고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35조]

출퇴근 재해 정의

- '출퇴근'이란 취업과 관련하여 주거와 취업장소 사이의 이동 또는 한 취업장소에서 다른 취업장소로의 이동을 의미하며, 이러한 이동 중 경로상에서 발생한 재해를 '출퇴근 재해'로 정의함.
  -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및 그 밖의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하는 사고를 의미

통상의 출퇴근재해가 산재로 인정되는 요건

-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
- 통상적인 경로 및 방법으로 이동하던 중 발생한 사고
  - 사회통념상 이용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로 및 방법으로 이동한 경우
- 경로 일탈 또는 중단이 없는 경우에 한함
  - 출퇴근을 위한 이동 중 개인적인 이유로 경로를 벗어나거나 멈춘 경우 제외
  - 단,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 인한 일탈·중단은 예외로 인정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산재법 시행령 제35조 제2항)**

1) 일상생활에 필요한 용품을 구입하는 행위
   - 슈퍼, 편의점 등에서 식료품을 구입하는 경우 등
2)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직업교육훈련촉진법」에 따른 직업훈련기관에서 직업능력개발에 기여할 수 있는 교육이나 훈련받는 행위
3) 선거권이나 국민투표권을 행사하는 행위
4) 근로자가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아동 또는 장애인을 보육기관 또는 교육기관에 데려다주거나 데려오는 행위
5)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에서 질병의 치료나 예방을 목적으로 진료를 받는 행위
6) 근로자의 돌봄이 필요한 가족 중 의료기관 등에서 요양 중인 가족을 돌보는 행위

※ 단,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 인정되더라도, 특정장소(슈퍼, 병원 등)에서 발생한 사고는 산재보상에서 제외

• 교통수단별 주요 재해발생 유형

교통수단별 주요 재해발생 유형

지하철

- 에스컬레이터에서 뛰거나 걷다가 발이 끼이거나 걸려 넘어짐
- 역사 내 계단 등에서 뛰거나 걷다가 넘어짐
- 무리한 탑승을 하려다 승강기도어 또는 스크린도어에 끼임
- 역사 내 도보 이동 시 휴대폰 시청으로 전방주시 소홀에 따른 부딪힘, 넘어짐

버스

- 버스 승·하차시, 급출발 또는 급정지에 따른 넘어짐
- 손잡이를 잡지 않아 버스 운행 중 넘어짐
- 버스 도어 개 · 폐시 부딪힘, 끼임
- 버스 하차시 버스 옆으로 달려오던 이륜차와 부딪힘
- 버스승강장이 아닌 차도로 내려와서 버스를 탑승하려다 버스에 부딪힘

이륜차

- 빗길, 눈길, 고르지 못한 노면 등에 의한 미끄러짐 또는 넘어짐
- 운행 중 휴대폰 사용에 의한 넘어짐
- 휴대폰을 사용중인 보행자, 골목에서 갑자기 튀어나오는 차량 등에 부딪힘
- 신호를 위반하여 운행 중 교통사고

※ 승차용 안전모 등 보호구 착용 필수

도보

- 도보 이동 시 휴대폰 시청에 따른 넘어짐 또는 부딪힘
- 빗길, 눈길, 고르지 못한 노면 등에 의한 미끄러짐 또는 넘어짐
- 이어폰 착용에 따른 주변 경고음 미인지로 다른 보행자나 차량 등과 부딪힘
- 무단횡단 등 신호위반에 따른 교통사고

• 출퇴근 재해사례

출근길 버스 탑승을 위해 달려가던 중 보도블럭 턱에 걸려 넘어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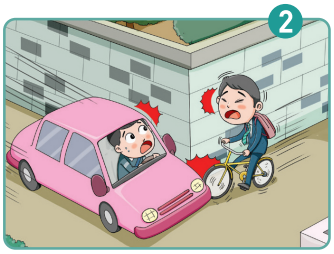

자전거를 타고 회사로 출근하던 중 골목에서 갑자기 진입하는 차량과 부딪힘

버스 손잡이를 잡지 않고 휴대폰을 시청하던 중 버스가 급정거하여 넘어짐

야근 후 집으로 퇴근하는 길에 주변이 어두워 돌뿌리에 걸려 넘어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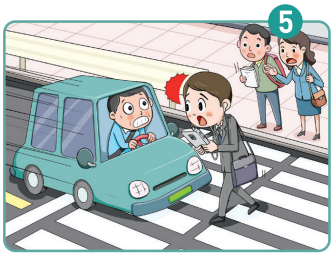

휴대전화를 보면서 출근하던 중 길을 건너다 차량과 부딪힘

비오는 날 지하철 역사 내 계단 이동 중 미끄러져 넘어짐

4. 안전·보건교육

사업주는 근로자가 작업장의 유해·위험요인 등 안전보건에 관한 지식을 습득하고, 이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게 하여 근로자 스스로 산업재해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

[참고 :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 단,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소매점(체인화 편의점 포함)의 사업주는 안전·보건교육 실시 의무의 적용이 제외되나, 사업주는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소 등 안전교육에 관한 정보를 근로자에게 주지시키고, 근로자는 이를 준수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사업주 등의 의무) 및 제6조(근로자의 의무)]

안전·보건교육 종류

교육 종류	교육 대상		교육 시간	
			5인이상 50인 미만	50인 이상
정기 교육	사무직		매분기 1.5시간 이상	매분기 3시간 이상
	비사무직	판매업무 직접 종사자	매분기 3시간 이상	매분기 3시간 이상
		그 외	매분기 3시간 이상	매분기 6시간 이상
	관리감독자		연간 8시간 이상	연간 16시간 이상
채용시 교육		일용근로자	0.5시간 이상	1시간 이상
		그 외	4시간 이상	8시간 이상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일용근로자	0.5시간 이상	1시간 이상
		그 외	1시간 이상	2시간 이상
특별교육		일용근로자	1시간 이상	2시간 이상
		그 외	8시간 이상	16시간 이상

- 관리감독자 : 경영조직에서 생산과 관련된 업무와 소속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부서의 장이나 그 직위를 담당하는 자
- 생산직근로자 : 일용직 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 일용근로자 : 1일 단위 계약으로 채용되고 당일 약정된 근로 종료 시 근로관계가 계속 유지되지 않는 자

- 특별교육대상인 경우에는 상시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단,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할 필요는 없으며 해당 작업에 근로자를 투입하는 경우에 한해 해당 시간만큼 실시하되 단기간 또는 간헐적 작업*의 경우 2시간 이상으로 규정한다.
  - 단기간작업 : 2개월 이내 종료되는 1회성 작업
  - 간헐적작업 : 연간 총 작업일수가 60일을 초과하지 않는 작업
-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교육의 경우 교육 시간은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사용하는 물질의 유해성, 위험성, 취급 주의사항 등에 대하여 근로자를 대상으로 교육하여야 하며, 이 때 실시한 교육시간만큼 정기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인정함.

안전·보건교육 강사 요건

- 사업주가 직접 실시하거나 다음 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이 실시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및 산업보건의
  - 공단에서 실시하는 해당 분야 강사요원 교육과정 이수자
  -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산업보건지도사
  -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교육대상 작업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안전·보건교육 내용

교육과정	정기교육	
	근로자	관리감독자
교육내용	• 산업안전 및 사고예방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에 관한 사항 •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에 관한 사항 •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 작업공정의 유해·위험과 재해 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 표준안전작업방법 및 지도요령에 관한 사항 • 관리감독자 역할 및 임무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 및 일반관리에 관한 사항	

교육과정	채용시 및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교육
교육내용	• 기계·기구 위험성과 작업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 • 작업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 정리정돈 및 청소에 관한 사항 • 사고발생 시 긴급조치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에 관한 사항 •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 대상화학물질의 명칭(또는 제품명) • 취급상의 주의사항 • 응급조치 요령 및 사고 시 대처방법 • 물질안전보건자료 및 경고표지를 이해하는 방법 • 적절한 보호구 • 물리적 위험성 및 건강 유해성

▶ 특별안전·보건교육 대상 작업별 교육내용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표 8의2 참고

※ 참고 : http://www.kosha.or.kr(안전보건공단) ⇨ 정보마당 ⇨ 안전보건자료실

안전보건교육일지 (예시)	결재	담당	대표(가맹점주)

교육의 구분	1. 채용시 교육 2.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3. 특별안전보건교육 4. 정기안전보건교육				
교육인원	구분	계	남	여	교육미실시사유
	교육 대상자 수				
	참석인원				
	미실시자 수				
교육일시	년 월 일 / 시 분 ~ 시 분				
교육실시자 및 교육장소	성 명	직 명	실시 장소	비고	
교육과목					
교육내용					
특이사항					

안전보건교육 참석자 명단

연번	소속	성명	날인	연번	소속	성명	날인
1				11			
2				12			
3				13			
4				14			
5				15			
6				16			
7				17			
8				18			
9				19			
10				20			

● 작업시작전 10분 안전보건 컨텐츠

5. 안전보건표지

사업주는 사업장의 유해하거나 위험한 시설 및 장소에 대한 경고, 비상시 조치에 대한 안내, 그 밖에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내용의 안전·보건 표지를 설치하거나 부착하여야 한다.

이 때, 외국인근로자를 채용한 사업주는 외국어로 된 안전·보건 표지와 작업안전수칙을 부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참고 : 산업안전보건법 제 12조]

안전·보건표지의 종류

1. 금지표지	101 | 출입금지	102 | 보행금지	103 | 차량통행금지	104 | 사용금지
	105 | 탑승금지	106 | 금연	107 | 화기금지	108 | 물체이동금지
2. 경고표지	201 | 인화성물질 경고	202 | 산화성물질 경고	203 | 폭발성물질 경고	204 | 급성독성물질 경고
	205 | 부식성물질 경고	206 | 방사성물질 경고	207 | 고압전기 경고	208 | 메달린 물체 경고
	209 | 낙하물 경고	210 | 고온 경고	211 | 저온 경고	212 | 몸균형 상실 경고
	213 | 레이저광선 경고	214 | 발암성·변이원성·생식독성·전신독성·호흡기·과민성물질경고	215 | 위험장소 경고	

3. 지시표지	301	보안경 착용	302	방독마스크 착용
	303	방진마스크 착용	304	보안면 착용
	305	안전모 착용	306	귀마개 착용
	307	안전화 착용	308	안전장갑 착용
	309	안전복 착용		
4. 안내표지	401	녹십자 표지	402	응급구호 표지
	403	들것	404	세안장치
	405	비상용 기구	406	비상구
	407	좌측비상구	408	우측비상구
5. 관계자외 출입금지	501	허가대상물질 작업장 관계자외 출입금지 (허가물질 명칭) 제조/사용/보관 중 보호구/보호복 착용 흡연 및 음식물 섭취 금지	501	석면취급/해체 작업장 관계자외 출입금지 석면 취급/해체 중 보호구/보호복 착용 흡연 및 음식물 섭취 금지
	501	금지대상물질의 취급 실험실 등 관계자외 출입금지 발암물질 취급 중 보호구/보호복 착용 흡연 및 음식물 섭취 금지		
6. 문자 추가 시 예시문	휘발유화기엄금			

- 내 자신의 건강과 복지를 위하여 안전을 늘 생각한다
- 내 가정의 행복과 화목을 위하여 안전을 늘 생각한다
- 내 자신의 실수로써 동료를 헤치지 않도록 안전을 늘 생각한다
- 내 자신의 일으킨 사고로 인한 회사의 재산과 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을 늘 생각한다
- 내 자신의 방심과 불안전한 행동이 조국의 번영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안전을 늘 생각한다

표지의 설치기준

- 근로자가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장소·시설 또는 물체에 설치·부착
- 흔들리거나 쉽게 파손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설치·부착
- 설치 또는 부착이 곤란한 경우 해당물체에 직접 도장 가능

6. 보호구

보호구는 재해나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해 작업자가 착용하는 기구나 장치를 의미하며, 사업주는 유해·위험한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작업조건에 적합한 보호구를 지급하고 근로자는 지급받은 보호구를 철저히 착용하여야 한다.

[참고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제33조]

편의점에서 사용하는 대표적인 보호구

- **베임방지장갑**
  - 칼, 가위 등을 사용한 검수작업
- **고무장갑**
  - 세척, 청소 등
- **미끄럼방지안전화**
  - 바닥 물기·기름기 또는 빙판길 등에 의해 미끄러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
- **팔 토시, 장갑**
  - 전기튀김기, 온장고 등의 기기 주변에서 작업

보호구 지급대장(예시)

결재	담당	대표(가맹점주)

본인은 아래와 같이 보호구를 지급받았음을 확인하며, 작업장에서 항시 보호구를 착용하고 작업하겠습니다.

성명	지급 내역				지급일	서명
	안전화	팔토시	안전모	기타( )		

7. 위험성평가

사업주는 근로자의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장 내 유해·위험요인을 찾아내어 위험성을 결정하고 개선하는 등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실시내용 및 실시결과를 기록하여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참고 :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의2]

위험성평가 정의

-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요인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가능성(빈도)과 중대성(강도)을 추정·결정하여 그에 따른 실현가능한 감소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는 일련의 과정을 의미

위험성평가의 실시주체

- 위험성평가는 사업주가 주체가 되어 모든 작업에 대해 근로자와 함께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여 실시

구분	내용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위험성평가 실시를 총괄 관리
안전보건관리자	위험성평가 실시에 관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지도·조언
관리감독자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그 결과에 따라 개선조치를 시행
근로자	유해·위험요인 파악, 감소대책의 수립에 해당 작업의 근로자 참여

위험성평가 절차

① 사전준비

- 위험성평가 실시계획서 작성, 평가대상 선정, 평가에 필요한 각종 자료 수집

② 유해·위험요인 파악

- 사업장 순회점검 및 안전보건 체크리스트 등을 활용하여 사업장 내 유해·위험요인 파악

③ 위험성 추정

- 유해·위험요인이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 및 중대성의 크기를 추정하고 위험성 크기 산출

④ 위험성 결정

- 유해·위험요인별 위험성추정 결과와 사업장 설정 허용가능한 위험성 기준을 비교하여 추정된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가능한지 여부 판단

⑤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 허용 불가능한 위험성을 합리적으로 실천 가능한 범위에서 가능한 한 낮은 수준으로 감소시키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실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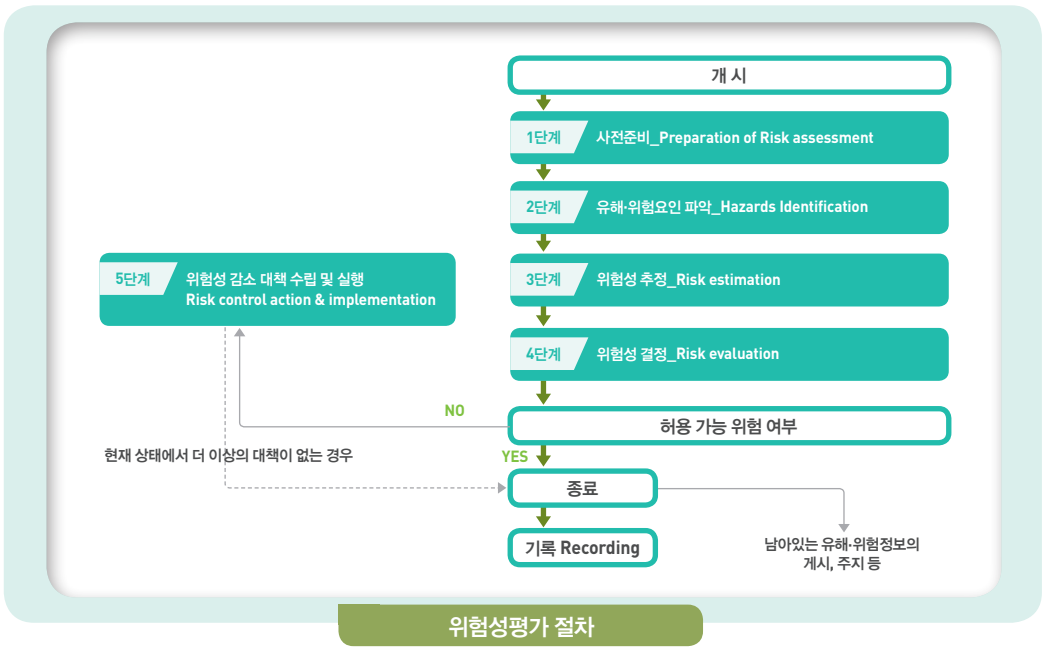

위험성평가 절차

위험성평가 관련 정보

• 위험성평가지원시스템 KRAS(http://kras.kosha.or.kr/) 참고

- 위험성평가 실시규정 및 실시
- 위험성평가 관련 교육 및 인정심사 신청
- 화학물질 위험성평가
- 관련서식 자료
- 컨설팅 기관 안내

8. 근로자 건강진단

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유지하기 위하여 근로자가 건강진단기관에서 정기적으로 건강진단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참고 :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

건강진단의 종류 및 실시대상

종류	일반 건강진단	특수 건강진단	배치전 건강진단	수시 건강진단	임시 건강진단*
대상	전체 근로자	특수건강진단 대상업무 종사 근로자		건강장해 의심증상 또는 의학적소견 근로자	지방고용노동관서 명령 근로자

※ **임시 건강진단**

동일 근무자와 유사 질병증상이 발생한 경우, 직업병 유소견자가 다수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건강진단의 실시기관**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기관

건강진단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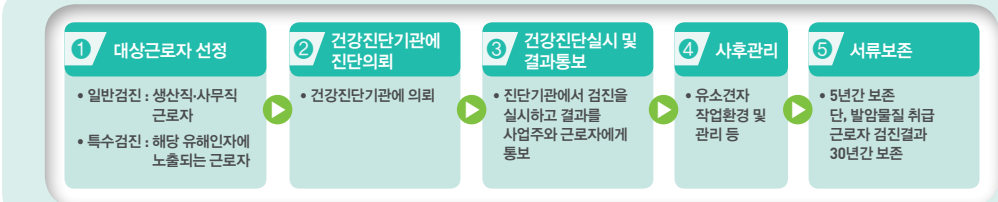

건강진단 절차

- 일반건강진단

  -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해 사업주가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건강진단으로 사무직 근로자 2년에 1회, 그 밖의 근로자 1년에 1회 실시하여야 한다.

  ※ 사무직 근로자 : 공장 또는 공사현장과 같은 구역에 있지 아니한 사무실에서 서무·인사·경리·판매·설계 등 사무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로 판매업무 등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9. 근골격계질환 예방

사업주는 근로자의 단순 반복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참고 :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근골격계질환의 정의

- 반복적인 동작, 부적절한 작업자세, 무리한 힘의 사용, 진동 및 온도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건강장해로써 목, 어깨, 허리, 팔·다리의 신경·근육 및 그 주변 신체조직 등에 나타나는 질환

근골격계질환작업의 종류

하루 4시간 이상 집중적으로 자료 입력 등을 위하여 키보드 또는 마우스를 조작하는 작업

하루 총 2시간 이상 머리 위에 손이 있거나, 팔꿈치가 어깨위에 있거나, 팔꿈치를 몸통으로부터 들거나, 팔꿈치를 몸통 뒤쪽에 위치하도록 하는 상태의 작업

하루 총 2시간 이상 지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4.5kg 이상의 물건을 한 손으로 들거나 동일한 힘으로 쥐는 작업

하루 총 2시간 이상 쪼그리고 앉거나 무릎을 굽힌 자세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하루 25회 이상 10kg 이상의 물체를 무릎 아래에서 들거나, 어깨 위에서 들거나, 팔을 뻗은 상태에서 드는 작업

하루 총 2시간 이상 시간당 10회 이상 손 또는 무릎을 사용하여 반복적으로 충격을 가하는 작업

하루 2시간 이상 목, 어깨, 팔꿈치, 손목 또는 손을 사용하여 같은 동작을 반복하는 작업

지지되지 않은 상태이거나 임의로 자세를 바꿀 수 없는 조건에서 하루 총 2시간 이상 목이나 허리를 구부리거나 트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하루 총 2시간 이상 지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1kg이상의 물건을 한 손의 손가락으로 집어 옮기거나, 2kg 이상에 상응하는 힘을 가하여 한 손의 손가락으로 물건을 쥐는 작업

하루 10회 이상 25kg 이상의 물체를 드는 작업

하루 총 2시간 이상, 분당 2회 이상 4.5kg 이상의 물체를 드는 작업

근골격계질환 예방을 위한 조치

- **근골격계질환 유해요인 조사 실시**
  - 근로자가 근골격계부담작업을 하는 경우 3년마다 유해요인조사를 실시 단, 신설 사업장의 경우 신설일로부터 1년 이내에 최초 조사 실시
    ※ KOSHA GUIDE(H-9-2012)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 지침 참고
  - 유해요인 조사 항목
    ① 설비, 작업공정, 작업량, 작업속도 등 작업장 상황
    ② 작업시간, 작업자세, 작업방법 등 작업조건
    ③ 작업과 관련된 근골격계질환 징후와 근로자 증상 유무 등
  - 유해요인 조사결과 근골격계질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인간공학적으로 설계된 보조·편의설비를 설치하는 등 작업환경 개선에 필요한 조치 이행
    ※ KOSHA GUIDE(H-65-2012) 사업장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 프로그램 참고

- **근골격계질환 예방 교육 실시**
  - 사업주는 사업장 내 작업공정 중 근골격계부담작업에 해당하는 작업을 찾고 그에 따른 유해요인과 대책, 올바른 작업자세 및 근골격계질환의 증상과 징후, 발생 시 대처요령 등에 관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 **중량물 취급장소 및 취급자 관리**
  - 근로자가 중량물(5kg 이상)을 들어올리는 작업을 하는 작업장소에는 물품의 중량과 무게중심에 대하여 작업장 주변에 안내표시를 하여야 하며, 취급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올바른 중량물 취급방법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
  - 가급적 중량물 운반 시 이동대차 등의 도구를 사용하도록 하며, 취급 곤란한 물품은 손잡이를 붙이거나 갈고리 등의 적절한 보조도구를 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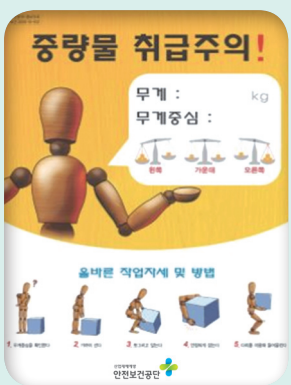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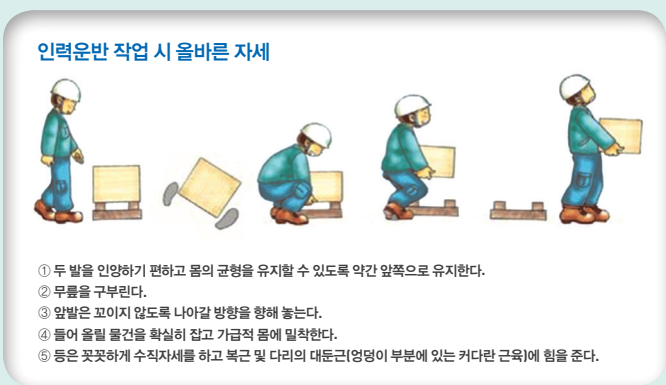

서서 일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

사업주는 지속적으로 서서 일하는 근로자가 작업 중 때때로 앉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에는 당해 근로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의자를 비치하여야 한다.

[참고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0조]

- **정의**
  - 서서 일하는 작업이란 하루 근무 중 장시간을 서 있거나 걸어 다니면서 하는 작업으로 판매직, 계산직 등의 흔한 작업형태임
- **건강장해**
  - 근골격계질환 : 요통, 다리 및 발의 통증
  - 순환기계질환 : 부종, 하지정맥류, 심근경색 및 뇌졸중 등 발병 위험도 증가
  - 임신부의 경우 조산, 저체중아 출산, 자연유산 등의 위험도 증가
- **작업환경 개선사항**
  - 때때로 앉을 수 있는 좌식의자 또는 입·좌식의자 사용
  - 바닥에 양탄자, 피로예방매트 등을 깔고 작업
  - 발걸이, 발받침대 등 적절한 보조도구 사용

높낮이 조절의자 | 피로예방매트 | 발받침대

- **근로자 개인 관리 방법**
  - 굽이 높지 않고(4cm 이하) 단단하며 신발바닥이 너무 얇지 않은 신발 착용
  - 주기적으로 허리, 하지의 스트레칭 실시
  - 필요시 무릎 및 발목보호대, 고탄력 스타킹(10~15mmHG 압력 유지) 등 사용
  - 허리, 무릎, 발목, 발 등에 통증이나 야간 근육경련, 부종 등의 증상이 있을 경우 의사 진료 필요

10. 감정노동 관리

사업주는 근로자가 장시간 근로, 야간작업을 포함한 교대작업 등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이 높은 작업을 하는 경우에 직무스트레스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를 하여야 한다.

[참고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69조]

감정노동 정의

- 감정노동은 적절한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일터에서 업무 성과와 연관되는 사람에게서 발생한다. 즉, 근무 중 실제 자신의 감정이 아닌 조직이 원하는 감정을 나타내는 것이 감정노동이며, 고객에게 음식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특성 상 고객을 대면하는 음식업 종사자의 대다수가 감정노동자라 할 수 있다.

감정노동과 건강문제

- 감정노동 종사자는 근무시간 동안 계속 긴장된 상태를 유지하게 되고, 높은 스트레스 반응을 보인다. 이러한 직무스트레스는 각종 소화기질환, 작업관련성 뇌심혈관계질환, 근골격계질환 등의 건강문제 뿐만 아니라 우울증, 자살충동,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등의 정신건강 문제를 유발하기도 한다.

직무스트레스의 관련성

감정노동 관리방안

- 사업주는 감정노동 실태 및 관련 요인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정책 및 '근로자 자기보호 매뉴얼'을 개발·보급하며, 근로자들에게 이에 대한 내용을 교육하여야 한다.

  ① 감정노동 실태조사 : 최근 몇 년간 사업장 내에서 발생한 사건 보고서, 고객 컴플레인 기록 등을 부서, 작업별, 발생시간 등으로 구분하여 조사

  ② 설문조사 : 근로자 설문을 통해 감정노동 실태 관련 위험요인 파악

  ③ 현장점검 : 주기적으로 사업장을 순회하며 감정노동을 가중 시킬 수 있는 위험요소, 조건, 상황 등을 파악하고 근로자 면담을 통해 개선점 모색

- 적정 서비스 기준 및 고객 응대매뉴얼 등 개발·보급 및 교육
  - 고객에게 무조건 친절히 응대하는 것이 아니라, 적정 서비스기준을 제시하고 악성고객 관리규정 및 대응매뉴얼을 만들어 근로자에게 교육 실시
- 근로자들의 고충을 전달할 수 있는 의사소통 채널 마련
- 고객과의 갈등이나 분쟁 발생 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는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직장문화를 조성 할 수 있도록 독려
- 근로자가 적정 수의 고객을 응대하도록 적정 인원의 근로자를 배치하고 감정노동 수행 후 휴식 시간 및 공간 등 제공
- '건강증진 프로그램' 실천을 통해 근로자의 심리적 안정 독려

chapter 04

주요 공정에 따른 유해·위험요인 및 예방대책

- 주요 공정
- 주요 공정별 위험요인 및 예방대책
- 비상상황 대처요령

04. 주요 공정에 따른 유해·위험요인 및 예방대책

1. 주요 공정

주요 공정		작업 내용	기계·기구 및 물질
상품 입고		판매용 상품 및 자재 입고	• 탑차 • 이동대차
운반 및 진열		상품을 확인하는 검수작업을 거쳐 창고로 운반하거나 매대에 진열	• 이동대차 • 칼 • 작업발판, 사다리 • 냉장고, 냉동고
조리 및 판매		가공식품 조리 및 판매	• 찐빵기계 / 전자레인지 • 전기온수기 / 전기온장고 • 전기튀김기
		택배 접수	• 중량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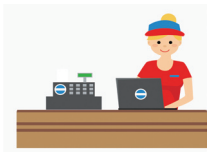	고객 응대 및 계산	• 금고
청소 등 후처리		매장 청소	• 청소도구 • 세제
		점포관리	• 사다리 • 드라이버 등 수공구

2. 주요 공정별 위험요인 및 예방대책

편의점에서는 상품 입고 및 운반·진열 작업 중 근골격계질환, 온수기 등에 의한 화상·열상, 상품 진열을 위해 사다리 사용 중 넘어짐 또는 떨어짐 등의 산업재해가 발생한다. 뿐만 아니라 고객응대 과정에서 감정노동에 의한 스트레스 관련 질환 발생 우려가 높으며, 강도 또는 취객 등에 의한 상해사고도 빈번히 발생한다.

가맹본부는 가맹점주(사업주)에게 도·소매업에 해당하는 산업안전보건법령 뿐 아니라 다음의 사항을 안내함으로써 가맹점주(사업주)의 자율 안전보건활동을 지원하여야 한다.

- 사용설비(온수기, 사다리 등) 별 유해·위험요인, 안전한 작업방법, 점검요령, 재해 발생 또는 비상상황 발생 시 대처요령 등에 안전·보건정보 제공
- 작업 전 안전점검을 할 수 있도록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제공
- 보호구 지급 및 교체주기에 관한 가이드 제공
- 최근 안전·보건이슈사항 및 동종업종 사고사례 공유
- 안전보건활동 우수사례 전파 및 우수 점포 포상
- 자외선 살균기 작동 중 램프 불빛에 노출되지 않을 것

가맹점주(사업주)는 가맹본부에서 제공하는 안전보건정보를 숙지 및 시행하고 근로자를 대상으로 안전보건 교육을 실시하는 등 자체적인 안전보건활동에 힘써야 한다.

- 재해예방을 위한 슬로건, 포스터, 안전보건표지 등을 게시
- 작업전 안전점검 실시 및 보호구 지급·착용관리
- 무리한 작업 또는 시간에 대한 강요 및 재촉 금지
- 비상상황(화재, 절도사건 등) 발생시 대처요령 안내

상품입고

주요재해사례

- 비오는 날 트럭 위에서 상품을 내리던 중 차량 내부 바닥 빗물을 밟고 미끄러져 차량에서 떨어짐
- 상품진열을 위해 플라스틱 음료 박스를 운반하던 중 손이 미끄러워 박스를 놓쳐 왼쪽 발등에 부딪힘
- 빵 반죽을 운반하던 중 바닥에 쌓여있던 상자에 발이 걸려 넘어짐
- 상품 정리를 위해 봉투를 뜯기 위해 칼로 작업 하던 중 손을 베임

주요 작업별 유해·위험요인 및 재해예방대책

- 교　육 : 올바른 중량물 취급방법, 근골격계질환예방을 위한 스트레칭법
- 표　지 : 중량물 무게중심 및 무게 표지, 스트레칭방법 게시
- 보호구 : 미끄러짐방지 안전화, 미끄럼방지 장갑 등

주요 작업	유해·위험요인	예방대책
상품 하차 및 검수	• 상품 등 중량물취급에 의한 근골격계 질환 • 바닥 장애물 및 결빙·물기 등에 의한 넘어짐·미끄러짐 • 칼 등 도구에 베임 • 탑차(화물차량)에 충돌	• 미끄럼방지화, 미끄럼방지 장갑 등 개인보호구 착용 철저 • 작업 전 차량 주변 바닥 물기, 결빙 등 제거 • 경사로에서 하역 작업 시 고임목 등 설치 • 차량 주변 보행자, 자전거, 이륜차 등에 주의 • 차량에 오르내릴 때 발판 사용(뛰어내림 금지) • 칼 등의 사용 시 베임방지장갑 착용 • 올바른 중량물 취급방법 및 스트레칭 방법 등 교육 실시 • 베임, 미끄러짐 조심 등 표지판 부착

운반 및 진열

주요재해사례

- 상품(우유박스: 약 15kg)을 냉장고로 운반하던 중 허리 부상을 당함
- 캔음료를 음료수냉장고(워크인 냉장고)에 채워넣던 중 가장 뒤쪽에 있던 맥주캔이 머리위로 떨어져 물체에 맞음
- 상품을 진열하기 위해 우유박스를 밟고 올라가 작업하던 중 박스가 부서져 균형을 잃고 넘어짐

주요 작업별 유해·위험요인 및 재해예방대책

- 교　육 : 올바른 중량물 취급방법, 근골격계질환예방을 위한 스트레칭법, 작업발판의 안전한 사용법
- 표　지 : 중량물 무게중심 및 무게 표지, 스트레칭방법 게시
- 보호구 : 미끄러짐방지 안전화, 미끄럼방지 장갑 등

주요 작업	유해·위험요인	예방대책
운반	• 상품 등 중량물 취급에 의한 근골격계질환 • 이동대차 충돌 및 물건낙하 • 매장바닥 돌출부, 문턱 등 장애물에 걸려 넘어짐	• 미끄럼방지화, 미끄럼방지 장갑 등 개인보호구 착용 철저 • 미끄러짐, 중량물 취급주의 표지판 부착 • 중량물 취급 시 이동식대차 사용 • 충분한 시야확보를 위해 적정높이로 적재하여 운반 - 편하중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재 • 통행로 정리정돈 및 장애물 제거 • 매장 바닥 돌출부, 문턱 등 점검 • 이동대차의 바퀴 및 본체 이상·손상여부 수시 확인
적재 및 진열	• 작업발판 사용 중 넘어짐 • 이동식 사다리에서 떨어짐 • 상품 등 중량물 취급에 의한 근골격계질환 • 이동대차 충돌 및 물건낙하 • 냉장고 문에 손 끼임 • 깨진 유리제품에 의한 베임	• 선반은 편평하고 안정된 장소에 설치하고 충분한 강도의 재질 사용 • 안전한 전용 작업발판 또는 이동식사다리 사용 - 의자, 유제품박스 등 사용 금지 • 적정높이 및 적정무게로 적재 - 무거운 물건을 선반 아래쪽 보관 • 중량물 취급방법 및 스트레칭 등 교육 실시 • 끼임·베임, 넘어짐 주의 표지판 부착

조리 및 판매

주요재해사례

- 치킨 조리를 위해 기름 온도를 높이던 중 자리를 이탈하여 고객 응대(계산)를 하다 기름에 불이 붙어 화재 발생
- 매장에 강도가 침입하여 경찰이 오기 전 실랑이 하던 중 상해를 입음
- 술에 취한 취객이 음료를 구입하며 비닐봉투에 넣어달라 요구하였고, 이에 비닐봉투비를 청구하자 시비가 되어 집에서 가져온 칼로 복부를 찔러 사망

주요 작업별 유해·위험요인 및 재해예방대책

- 교 육 : 사용설비별 안전한 사용법, 감정노동 스트레스 관리방안
- 표 지 : 고온주의 등
- 보호구 : 미끄러짐방지 안전화, 장갑, 팔토시 등

주요 작업	유해·위험요인	예방대책
조리	• 화재 및 화상위험 - 찐빵기계, 전자레인지, 전기온수기, 전기온장고, 전기튀김기 • 온수, 식용유 등에 의한 화상	• 미끄럼방지화, 장갑 등 개인보호구 착용 철저 • 전기튀김기, 유류 보관장소 주변 소화기 설치 • 각 설비별 안전한 작업방법에 대한 교육 실시 - 예) 전기튀김기 사용 중 자리이탈 금지 등 • 통행로 정리정돈 및 장애물 제거 • 고온주의, 화상주의 등 안전보건표지 부착 • 고온의 설비는 충분히 식힌 후 청소·점검 실시 • 칼, 가위 등 사용 시 주의
판매	• 장시간 서서 작업 시 근골격계질환 • 강도 등에 의한 상해위험 • 감정노동에 따른 직무스트레스	• 장시간 서서 작업하는 근로자에게 높낮이조절 의자, 발받침대, 피로예방매트 등 지급 • 강도 등 비상상황 발생시 대처요령 및 감정노동 스트레스 관리방법, 스트레칭 방법에 관한 교육 실시 • 풋 SOS 등 비상 경보장치 설치
택배 접수	• 중량물 취급에 따른 근골격계질환	• 중량물 운반 시 이동대차 사용 • 무겁거나 혼자 들기 어려운 상품은 동료작업자 또는 주변의 도움을 받음 • 미끄럼방지 장갑 착용 • 중량물 취급방법에 관한 교육 실시

청소 등 후처리

주요재해사례

- 호빵 기기 호스 뚜껑을 여는 순간 기기 내부의 뜨거운 물이 쏟아져 손에 화상을 입음
- 라면 등 음식물 기름기 제거를 위해 온수통에서 온수를 받아 청소하던 중 용기가 쏟아져 발에 화상을 입음
- 분리수거를 위해 음식물쓰레기 등 쓰레기봉투를 매장 밖으로 운반하던 중 눈길에 미끄러져 발목을 부상당함

주요 작업별 유해·위험요인 및 재해예방대책

- 교　육 : 근골격계질환예방을 위한 스트레칭법, MSDS
- 표　지 : 고온주의, 미끄러짐주의, 스트레칭 방법 등 게시
- 보호구 : 미끄러짐방지 안전화, 고무장갑 등

주요 작업	유해·위험요인	예방대책
매장 청소	• 청소작업에 의한 근골격계질환 • 세제에 의한 피부손상 • 깨진 유리병 등에 베임	• 미끄럼방지화, 미끄럼방지 장갑 등 개인보호구 착용 철저 • 세제 등 사용물질은 MSDS를 보관하고 해당 내용에 관한 교육 실시 - 단, 일반세제(판매용)는 제외 • 가급적 인체공학적 청소도구 사용 • 통행로 정리정돈 및 장애물 제거 • 청소 시 보호구(고무장갑, 베임방지장갑, 마스크) 등 착용 • 고온의 설비는 충분히 식힌 후 청소 실시 • 물 청소 후 또는 냉장고 주변 바닥 물기 즉시 제거 • 보호구착용, 미끄러짐주의 등 표지판 부착

주요 작업	유해·위험요인	예방대책
점포 관리	• 이동식 사다리에서 떨어짐 • 드라이버 등 수공구에 충돌 • 작업발판에서 떨어짐 • 중량물 취급에 따른 근골격계질환 • 각종 화재사고 • 집중호우에 의한 침수 • 강풍에 의한 간판, 파라솔 등 낙하·충돌	• 안전한 작업발판 또는 이동식 사다리 사용 • 작업발판 등은 편평하고 단단한 바닥에 놓고 사용 • 전구 교체 등 작업 전 전원차단 • 분전반 차단기 조작 시 장갑 착용 • 감전주의, 떨어짐주의 등 표지판 부착 • 실외기 주변 박스, 폐지 등 가연물 적재 금지 • 백룸(창고), 실외기 주변 등에서 흡연 금지 • 작업 전 전기기계·기구의 전선 피복상태 확인 • 문어발식 콘센트 사용 금지 • 점포 내 차수판 및 모래주머니 비치 • 간판의 외벽 고정 상태를 수시로 확인하고, 강풍 시 스탠드 간판, 파라솔 등은 내부에 보관

안전한 기기 청소 방법

- **소형 찜기 청소**

① 찜기 전원을 차단 후 충분히 열을 식힌다.

② 조명등 선 분리 후 찜기에 연결된 호스뚜껑을 열어 배수한다.

③ 찜기 상하부 연결 걸쇠고리를 분리하여 상부와 하부를 분리한다.

④ 분리한 스팀판, 물솥을 세척한다.

⑤ 분리한 채반과 찜기를 마른행주 등으로 닦고 소독한다.

- **전기 튀김기 청소**

① 전원차단 후 최소 1시간 이상 기름 및 기기를 충분히 식힌다.

② 튀김기 열선을 젖힌 후 기름통을 들어올린다.

③ 키친타올 등으로 튀김기 하단부를 덮어 기름을 흡수하고 세정한다.

④ 깔때기 등을 사용하여 폐유통에 폐유를 붓는다.

⑤ 내부 잔여 기름 및 찌꺼기를 제거한 후 기름기제거제로 열선을 닦는다.

⑥ 튀김기 내부에 물과 세제를 넣은 후 충분히 가열한다.

⑦ 튀김기 전원을 차단하고 열선을 젖혀 충분히 식힌 후 통을 세척한다.

⑧ 튀김기 거치대 주변을 깨끗이 행주로 닦는다.

⑨ 튀김기 내 외부에 소독제를 분사하여 살균·소독한다.

⑩ 청소 후 벽면 및 주변 바닥 등에 기름기를 제거하고 소독한다.

편의점 안전보건 체크리스트

연번	항목	이행상태 및 조치 사항	
1	바닥은 청결하고 물기, 기름기 또는 장애물이 없는가?	☐ Yes ☐ No	
2	상품 진열로 인한 통행로 정리정돈 및 장애물은 없는가?	☐ Yes ☐ No	
3	미끄러짐 또는 넘어짐 등을 방지할 수 있는 신발을 착용하는가?	☐ Yes ☐ No	
4	판매상품이나 자재 입고 시에 중량물을 운반하기 위한 이동대차 등이 준비되어 있는가?	☐ Yes ☐ No	
5	제품이나 상품을 창고 운반 또는 높은 곳에 진열하기 위한 작업발판 또는 이동식 사다리는 준비되어 있는가?	☐ Yes ☐ No	
6	무겁거나 혼자 들기 어려운 제품과 상품 등은 동료 작업자 또는 주변의 도움을 받고 있는가?	☐ Yes ☐ No	
7	가공식품 조리를 위한 전기 튀김기, 온수기 등으로부터 화상을 방지할 수 있는 안전보건표지부착, 장갑 등이 비치되어 있는가?	☐ Yes ☐ No	
8	택배 접수, 상품운반 시 가급적 이동대차를 사용하도록 권고하며, 올바른 중량물 취급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였는가?	☐ Yes ☐ No	
9	제품 및 상품을 개봉할 때 사용하는 칼이나 가위 등에 의한 베임·찔림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베임방지장갑 등을 사용하는가?	☐ Yes ☐ No	
10	장시간 서서 일하는 장소에 입식 의자, 발 받침대, 피로예방매트 등이 준비되어 있는가?	☐ Yes ☐ No	
11	강도 등 비상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긴급 전화, 경보장치 및 보안카메라 등이 설치되어 있고, 잘 작동하는가?	☐ Yes ☐ No	
12	근로자 이동통로(매장 밖)상에 얼음, 눈 등을 제거하였는가?	☐ Yes ☐ No	
13	화재 예방을 위한 소화기가 적정장소에 비치되어 있으며,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있는가?	☐ Yes ☐ No	
14	감정노동자와 관련하여 고객응대매뉴얼을 제공하고, 직무스트레스 예방관리를 위한 안내를 하는가?	☐ Yes ☐ No	
15	사업주로부터 산업안전보건 교육 등을 정기적으로 받거나 매뉴얼(지침 등)을 제공받고 있는가?	☐ Yes ☐ No	

3. 비상상황 대처요령

① 화재 발생 시 대처요령

사업주는 폭발·화재 및 위험누출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방호조치를 하여야 하며, 폭발이나 화재를 미리 감지하기 위한 가스 검지 및 경보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또한, 해당 장소에는 적절한 소화설비를 설치하도록 한다.

[참고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편 제2장]

화재 예방 사전안전조치

- 사용하지 않는 전열기구는 코드를 분리하고 전기기계·기구의 전선, 플러그 등의 절연상태 및 손상여부 정기점검 실시
- 한 콘센트에 여러 개 플러그를 꽂아 사용하는 문어발식 사용 금지
- 튀김기 등 사용 시 자리를 비우지 않음
  - 식용유는 가열을 시작하여 일정시간(약 15분)이 지나 288~385℃가 되면 자연 발화위험이 있으므로, 자리를 비울 때에는 반드시 전원 차단
- 흡연장소 또는 난로 등의 화기나 전열기구 주변, 잘 보이고 사용하기에 편리한 곳에 소화기를 두되, 햇빛이나 습기에 노출되지 않도록 관리
  - 지시압력계, 용기변형·손상 여부, 안전핀 및 봉인줄 체결여부 정기점검
  - 1회/6개월 소화기를 뒤집어 내용물 경화방지 및 바닥면 부식 정기점검
  - ※ 식용유 등 유류사용 장소에는 K급소화기 비치
- 적정장소에 소화기 표지판 설치
- 계단 또는 통로 상에 물건 적치 금지

화재 대비 훈련

- 소화기 등 소화설비 사용법 훈련

※ 올바른 소화기 사용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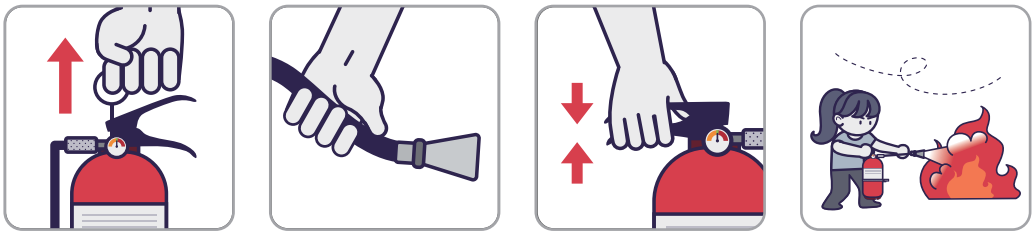

안전핀을 뽑고 | 화염을 향하고 | 손잡이를 강하게 움켜 주며 | 비로 쓸 듯이 소화

① 소화기를 불이 난 곳으로 옮겨 손잡이 부분 안전핀을 뽑는다.

② 바람을 등지고 서서 호스를 화염으로 향하게 한다.

③ 손잡이를 강하게 움켜쥐고 빗자루로 쓸 듯이 뿌린다.

- 비상구 위치 및 대피동선 확인

화재 발생 시 대처

- 불을 발견했을 때

  - '불이야' 하고 소리친 후 비상벨을 눌러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고 119 연락
  - 천장까지 닿지 않은 작은 불은 소화기를 활용하여 신속히 소화하고, 불길이 커져 소화가 힘들다 판단될 경우 신속히 대피

  ※ 식용유 화재 시 전원을 차단하고 튀김용기보다 큰 덮개(뚜껑)을 씌우거나 K급 소화기를 사용하여 화재 진압(물 또는 일반소화기 사용 절대금지!)

- 대처요령

  - 수건 등을 물에 적셔 입과 코를 가리고 낮은 자세로 유도등을 따라 대피
  - 손잡이를 만졌을 때 따뜻하거나 뜨거우면 문을 열지 않음
  - 엘리베이터는 사용을 금하고 계단으로 대피
  - 어린이, 노약자 우선으로 대피

화재사고 발생시 행동요령

그림	행동요령
	• 큰 소리로 화재 사실을 알리고 화재경보기를 누른다.
	• 신고가 가능하면 119에 신고한다. (화재발생 위치, 발화건물의 층수, 화재의 종류, 신고자 전화번호)
	• 화염과 연기가 적은 통로로 즉시 대피한다. 엘리베이터는 이용하지 말고 문을 손으로 짚어보았을 때, 뜨거우면 열지 말고 다른 곳으로 대피한다.
	• 화재 신고 후 초기 소화가 가능하다면 소화기, 소화전 등을 이용하여 불을 끈다. - 초기 소화가가 가능한 경우라도 탈출로는 확보되었는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가정용 소형 소화기의 경우 액체가 부족할 수 있고, 사용 경험이 없으면 불이 더 번지는 사고를 초래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불과 씨름하느니 줄행랑이 더 낫다"고 입을 모은다. 괜찮다 싶어도 화재 상황은 순식간에 돌변할 수 있다. (참고 : Men's Health 2014년 2월호)
	• 대피할 때는 자세를 낮추고 몸을 적신 수건이나 옷 등으로 코와 입을 가린다. 환기를 이유로 창문을 열어서는 안 된다. 탈출하면서 열린 문이 있으면 모두 닫는다.
	• 대피할 수 없는 경우 연기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물을 적신 옷이나 이불로 문틈을 막고 연기가 없는 창문을 통해 소리를 지르거나 흰 천을 흔들어 갇혀 있다는 사실을 외부에 알린다.
	• 대피한 후에는 절대로 화재가 난 곳으로 다시 들어가지 않는다. 이유를 막론하고 다시 들어가서는 안된다.

② 강도 등 발생 시 대처요령

국가통계포털 경찰범죄통계에 따르면 전국 편의점에서 발생한 강도·폭행 등 범죄는 2012년 6,995건에서 2016년 10,780건으로 증가하였으며, 이로 인한 편의점 직원의 상해·사망 피해도 증가하였다.

사업주는 이러한 피해예방을 위해 풋SOS 등의 시스템 도입, 비상상황 시 대처요령에 대한 근로자 교육 등을 사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편의점 강도 이렇게 예방하세요!

예방 환경을 만들어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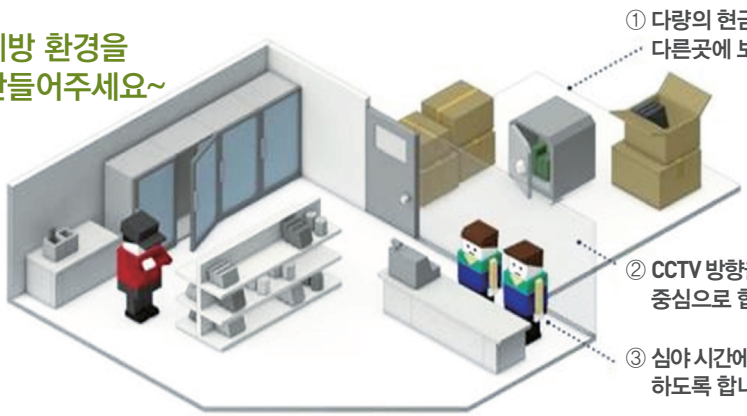

강도, 이렇게 대처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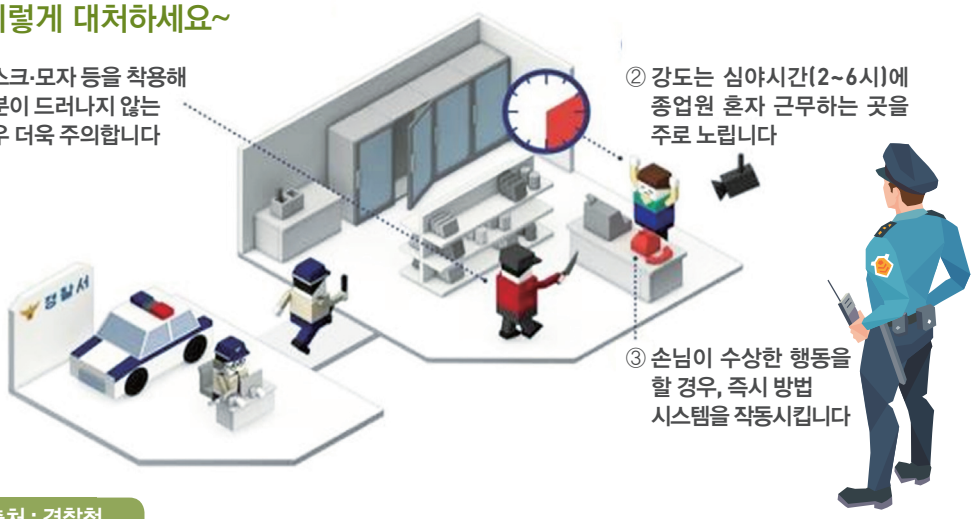

출처 : 경찰청

강도 등 사고예방

- 심야 및 야간 영업 시 가급적 2인 이상 작업 실시
  - 심야시간 단독근무 특히 여성 근무자는 강도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가급적 2인 이상 작업하도록 관리
- CCTV 각도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설치하고 CCTV, 비상벨(풋 SOS 등) 등 경비시설 작동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
  - CCTV 모니터는 가능한 계산대 아래쪽에 비치하여 손님들이 작동상태를 확인할 수 없도록 관리하고, 평소 고장여부에 관하여 철저히 점검 실시
- 거동이 수상한 사람(마스크, 모자, 장갑 착용 등) 출입 시 주의하여 동정을 살피고, 비상 시 경보시스템을 즉시 가동할 수 있도록 준비
- 창문에 포스터 등 부착 금지
  - 비상상황 발생 시 외부 도움을 받기 위해 편의점 외부에서 업소내부나 종업원이 보이도록 창문에 포스터 등 부착 금지
- 비상연락망 숙지

강도사건 발생 시 대처요령

- 범인을 자극하지 말고 침착하게 대처
- 가능하면 비상벨, 풋 SOS, 무통화 자동신고시스템 등을 범인이 눈치 채지 못하게 즉시 가동
  - 위급상황 시 발로 수화기를 내려놓을 수 있도록 평소 전화기는 계산대 바닥에 두고 사용
- 외부로 도망친 경우 즉시 112로 신고
- 범인의 얼굴 생김새, 복장, 말투, 행동 등을 주의 깊게 기억
  - 강도 범행으로부터 빠른 피해 회복을 위해 침착하게 범인의 인상착의 파악
- 범인 도주 시 도주경로를 파악하여 112로 신고하고, 범죄현장은 경찰관이 올 때까지 최대한 보존
  - 범인 인상착의, 차량 번호판, 도주경로 등을 메모하였다가 경찰관에게 신고

③ 지진 발생 시 대처요령

국가통계포털(통계청)의 지진 및 지진해일 일반통계에 따르면 전국에서 발생한 지진은 2017년 223건이며 2016년 규모 5.8 경주지진, 2017년 규모 5.4의 포항지진으로 지진 재해에 대한 두려움이 사회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국내의 경우 지진재해대책법이 2009년에 제정됨에 따라 아직 많은 건축물과 시설물이 내진설계가 되어 있지 않고, 특히 편의점은 다량의 상품들이 진열대에 적재되어 있어 지진 발생 시 진열대에서 떨어지는 물건에 의한 2차 재해발생의 위험이 매우 높다.

따라서 사업주는 이러한 지진발생 시 피해예방을 위해 지진에 대비하는 조치를 취하고, 근로자를 대상으로 지진발생 시 안전한 대처요령을 교육하여야 한다.

지진 대비

- 사전에 사업장 안전 확보
  - 탁자 또는 계산대 아래 등 안전한 대피 공간을 미리 파악해 둔다.
  - 지진발생 시 넘어지지 않도록 진열대 등을 견고히 고정한다.
  - 유리병 등 떨어져 깨지기 쉬운 물건은 높은 곳에 두지 않도록 한다.
  - 창문 등에 필름을 붙여 유리가 파손되지 않도록 한다.
- 근로자 대상 안전교육 실시
  - 가스, 전기 등을 차단하는 방법, 지진발생 시 올바른 대처요령, 소화기 사용법 등에 관하여 근로자 교육을 실시한다.

지진발생 시 대처요령

- 튼튼한 탁자 또는 계산대 아래에 들어가 다리 부분을 잡고 몸을 보호한다. 다만, 접이식 계산대 혹은 견고하지 않은 탁자 또는 계산대 아래에 들어가는 경우 방석 등으로 머리를 보호한다.

• 흔들림이 멈춘 후 가스, 전기 등을 차단하고 밖으로 나간다.
- 고층 건물의 경우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지 않고 계단을 이용하도록 하며, 떨어지는 유리, 간판 등에 주의하여 방석 또는 소지품 등으로 몸을 보호하면서 대피한다.
- 건물 밖으로 나오면 담장, 유리창 등에서 최대한 멀리 떨어져 소지품으로 머리를 보호하면서 대피한다.
- 운동장, 공원 등 넓은 공간으로 대피한다.

대피 시 주의 사항

연번	항목
1	화재가 발생하면 손수건 등으로 코와 입을 막은 후 연기를 피하여 최대한 자세를 낮추고 대피합니다.
2	야간에는 넘어지거나 추락할 위험이 있으니, 손전등을 사용하여 조심해서 대피합니다.
3	겨울철에는 추위로 몸 상태가 나빠질 수 있으니, 두꺼운 옷이나 휴대용 난로 등을 준비하여 추위에 대비한 후 대피합니다.
4	지하 공간에서는 정전 시 벽에 붙어 이동하고 가까운 출입구를 통해 밖으로 나갑니다.
5	끊어진 전선을 비롯한 사고의 위험이 있는 물건은 만지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6	대피 중에 휴대전화, 이어폰 등을 사용하면 발을 헛디뎌 부상의 위험이 있으므로 사용을 자제합니다.
7	화장실, 욕실에 있을 때는 거울이나 전구 등의 파손으로 다칠 수 있으니, 욕실에서 나와 안전한 장소로 이동합니다.
8	갇혔을 때는 주변의 딱딱한 물건을 이용하여 소리를 내어 구조를 요청합니다.

chapter 05

주요 유관기관 연락처

주요 유관기관 연락처

유관기관	홈페이지 주소	대표전화번호
고용노동부	http://www.moel.go.kr/	(국번없이) 1350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http://www.kosha.or.kr/	(국번없이) 1644-4544
근로복지공단	http://www.kcomwel.or.kr/	(국번없이) 1588-0075
(사)한국편의점산업협회	http://www.cvs.or.kr/	(02) 564-1348

안전보건공단 전국 연락처

일선기관명	주 소	전화번호
서울지역본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버들나루로 2길 8 7~8층	02-6711-2894
서울북부지사	서울특별시 중구 칠패로 42 우리빌딩 7층	02-3783-8307
강원지사	강원도 춘천시 경춘로 2370 한국교직원공제회관 2층	033-815-1056
강원동부지사	강원도 강릉시 하슬라로 182(교동) 정관빌딩 3층	033-820-2553
부산지역본부	부산광역시 금정구 중앙대로 1763번길 26	051-520-0596
울산지사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208번길 5	052-226-0510
경남지사	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259	055-269-0523
경남동부지사	경남 양산시 동면 남양산 2길 51 양산노동합동 청사 4층	055-371-7513
광주지역본부	광주광역시 광산구 무진대로 282 무역회관빌딩 8층	062-949-8724
전북지사	전북 전주시 덕진구 건산로 251 전주지방노동청 4층	063-240-8522
전북서부지사	전북 군산시 자유로 482 2층	063-460-3613
전남동부지사	전남 여수시 무선중앙로 35	061-689-4947
전남지사	전남 무안군 삼향읍 후광대로 242 전남개발공사 7층	061-288-8716
제주지사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삼로 473 중소기업지원센터 4층	064-797-7526
중부지역본부	인천시 부평구 무네미로 478	032-510-0578
경기지사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07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13층	031-259-7267
경기북부지사	경기 의정부시 추동로 140 경기북부상공회의소 1층	031-828-1964
경기서부지사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광덕4로 230(고잔동) 웨딩센트릴시티 2층	031-481-7543
경기동부지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쇳골로 17번길 3 소곡회관 2층	031-785-3354
경기중부지사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송내대로 265번길19 대신프라자 3층	032-680-6554
대구지역본부	대구광역시 중구 국채보상로 648 호수빌딩 19, 20층	053-609-0555
대구서부지사	대구광역시 달서구 달구벌대로 1834 성안빌딩 5층	053-650-6821
경북동부지사	경북 포항시 남구 포스코대로 402	054-271-2026
경북지사	경북 구미시 3공단 1로 312-23	054-478-8064
대전지역본부	대전광역시 유성구 엑스포로 339번길 60	042-620-5685
충북지사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가경로 161번길 20 KT 3층	043-230-7113
충남지사	충남 천안시 서북구 광장로 215 충남경제종합지원센터 3층	041-570-3406
본부 서비스안전실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400(북정동)	052-703-0739

펴낸이

고용노동부	산업예방보상정책국장	박 영 만
	산업안전과장	고 광 훈
	사무관	김 영 남
	주무관	권 중 화
	전문위원	김 상 현
안전보건공단	서비스안전실장	박 상 우
	서비스안전기술부장	박 문 호
	서비스안전기술차장	신 수 환
	서비스안전기술과장	이 정 연

편의점 프랜차이즈 안전보건가이드라인

발행일 초 판 I 2018년 8월

발행인 안전보건공단 박 두 용 이사장

발행처 안전보건공단 서비스안전실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400(북정동)

편집디자인 두드림애드
TEL (070)4795-4881

고객불편신고 대표전화 전화번호 I 1644-4544
팩스번호 I 1644-4549

2018-서비스-529

NOTICE

해당자료는 공공누리 제4유형으로 저작권은 안전보건공단에 있으며, 제3자에게 양도 또는 전매, 상업적인 용도로의 판매를 할 수 없고, 협의된 내용 외 재가공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산업재해예방
안전보건공단

안전보건공단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400(북정동)